

2023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 (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미래정책연구회 귀하

박상혁, 장태용, 황철규, 김종길, 허훈

이 보고서를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09. 19.

- 연구 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 연구원 : 김용민 (건국대학교, 조교수)
- 연구 원 : 장보원 (건국대학교, 강의초빙교수)
정성은 (건국대학교, 강의초빙교수)
- 보조 연구원 : 박희호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 자문 위원 : 고주현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위원)
전광진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정책기획본부장)

(요약문)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 (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김용민 · 장보원 · 정성은(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장에서 수집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해외 주요 지방정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민단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기반하여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런던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과 더불어 한국과 유사한 조직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정책과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요소를 파악하고 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FGI 분석 결과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FGI 분석 결과는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자와 시민단체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민단체 사업의 경우 선정과정부터 평가 결과까지 모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때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정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보조금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원인으로 시민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실제로 다수의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원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단체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관리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로 관리자의 경우 시민단체의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시민단체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지원 및 관리의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불필요한 성과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단체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보조금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확대, 행정 처리 관련 별도의 전문인력 지원,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시민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므로 확실적인 선정기준이나 성과평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은 선정 기준, 지원 기간, 성과 지표 등 대체로 단일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 이후 성과평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지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상적인 정량지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민단체는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선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FGI 결과 요약>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사업 선정 근거의 불명확성 ▪ 선정부터 평가까지 관리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표 부재 ▪ 단체의 성과 평가의 불명확함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의 문제점 지적 ▪ 심사지표 등 공개적인 점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관리 목적의 명확화 ▪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원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인씩 포함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마련 |
| 연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 예산 및 조직 축소 문제점 지적 ▪ 정권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 사업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의 갑작스러운 폐쇄 ▪ 일관되지 못한 지원 정책 ▪ 안정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공무원의 잦은 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 변화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사와 컨설팅이 필요 ▪ 시민단체-중간조직-서울시 간 협의체 개발,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 |
|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련 이해도가 낮음 ▪ 시민단체의 행정력 부족 ▪ 중복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관리 부족 ▪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업 행정 처리 관련 별도의 전문인력 지원 ▪ 시민단체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등을 개발 및 보급 ▪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 확대 필요 ▪ 장기적 관점의 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근거, 목적, 방향성 등에 따라 사업 간의 차이가 크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로 지원 근거나 결과를 평가함 ▪ 시민단체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 ▪ 지원 단체 다양성 및 규모 확대 시 인력 증대 미지원 ▪ 각기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에 대한 획일적 성과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에 반영해야 함 ▪ 시민단체의 분야에 따라 담당자들을 구체화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필요 ▪ 단기 또는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 ▪ 시민단체 특성에 맞는 정성 및 정량 평가 도입 ▪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의 평가 필요 |

□ 런던, 도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 비교

두 도시의 시민단체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위 한국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이다. 두 도시의 시민단체 지원, 관리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면 일단 불문법에 기초한 런던시는 도쿄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지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쿄는 서울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두 도시 모두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가지 요소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단체 관리가 과연 투명하고 언제나 접근 가능하며 시장의 소속정당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전문가들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시민단체가 지원에 선정되는지 각각의 원칙 부분에서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래 표에 정리한 것처럼 런던은 관련정책 전부가 공개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사전공개된 가운데 3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 아래에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주제에 지원 당사자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참가가 가능하다. 도쿄는 매년 사업의 선정주제를 사전공개하고 심사위원명단도 전면 공개된다. 또한 10년간의 경향도 공개되고 정치적 성격이 완전 배제된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 원칙에 준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런던, 도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 비교>

| | 런던 | 도쿄 | 서울 |
|-----|--|---|--|
| 투명성 | 관련정책, 담당 조직 및 제도, 지원 예산의 규모, 관리 방안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전면 공개 | 심사위원 명단 공개, 매년 선정 사업 방향성 사전 공개 | 일부 공개이거나 요청 시 공개 |
| 연속성 | 지원 사업 장기적 계획에 의거 실시 (3년 이상), 사업계획 사전 공개 | 10년간의 선정 사업 액수 전부 공개, 연도별 선정 경향 파악 가능 | 개별 년도 공개, 공개범위 한정 |
| 전문성 | 지원 당사자가 선정작업부터 참여, 전국 차원에서 자선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선정 |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존재 | 중간지원조직의 정치적 성격 분쟁 존재, 당사자 참여 불가능 |
| 다양성 | 사회복지자선단체, 종교자선단체, 문화유산자선단체, 교육·훈련자선단체, 의료연구자선단체, 노인자선단체, 스포츠·레크리에이션자선단체, 어린이·청소년자선단체, 가족자선단체, 국제자선단체, 환경자선단체 등 다양한 주제 선정 | 도쿄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제라면 모든 주제의 시민단체를 선정, 현재 등록 시민단체 수 740개 | 선정 시민단체 성격의 편향성, 정치성의 분쟁 존재, 다양성에 대한 비판 존재 |

□ 조례 개정 의견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제4조 :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으로 서울시장의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우선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훈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그 영향으로 전부개정된 조례의 문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전 조례(제7423호) 제5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조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해당 책무가 시장이 추진해야 할 시책이 우선과제이기보다 주요과제 정도의 무게로 설정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4조 제4항은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표현은 삭제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

2) 제7조 : 조례의 제2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장은 시의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동 조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성 측면에서 시의 기본계획에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FGI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인 시와 시민사회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 제22조 : 2022년 하반기, NPO지원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은 동 조례 제22조(센터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음에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센터 위탁 취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시장의 책무 중요도 현실화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u>우선과제</u> 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u>주요과제</u> 로 추진하여야 한다. |
| 지원 대상 명확화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u>시민사회 조직, 비영리단체</u>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u>시민사회 조직</u>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민관 협치 및 소통·협력 강화 |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u>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u> 5. <u>시민사회 활동가 양성</u>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u>시민사회 조직의 운영 지원 방안</u> 5.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신설) 시와 시민사회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 센터 위탁 | 없음 | 제22조의 2(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 |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취소 조항 신설 | | <p>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자가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p> |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당해연도 공익사업선정위원이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함으로써 셀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선정위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런던과 도쿄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공개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주요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 선정위원 구성 공개 및 셀프 평가 금지</p> | <p>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개정 2015. 10.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p>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p>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개정 2015. 10.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p>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신설) <u>위원 구성은 사업 선정이 완료된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선정위원은 선정에 참여한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u></p> |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범위 | 2 |
| 2. 연구의 내용 | 4 |
| 3. 연구의 방법 | 4 |
| II.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6 |
| III.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의 현황 | 9 |
| 1. 국내 관련 법·제도 체계 현황 | 9 |
| 가. 중앙정부 차원 | 9 |
| 나. 서울특별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 13 |
| 2.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17 |
| 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이슈 도출을 위한 FGI 설계 | 19 |
| 나. FGI 조사 결과 | 22 |
| 다. FGI 소결 | 44 |
| IV. 서울, 런던, 도쿄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비교·분석 | 47 |
| 1. 각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 개괄 | 47 |
| 가. 런던 | 48 |
| 나. 도쿄 | 63 |
| 2. 담당 조직 및 제도 | 69 |
| 가. 런던 | 69 |
| 나. 도쿄 | 71 |
| 3. 지원 예산 규모와 집행 관리 방안 | 73 |
| 가. 런던 | 73 |
| 나. 도쿄 | 86 |
| 4.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과 장단점 파악 | 89 |
| 가. 런던 | 89 |
| 나. 도쿄 | 91 |

| | |
|---|------------|
| V. 진단과 제언 | 96 |
| 1. 우수 해외 사례 설명 및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적 제언 | 96 |
| 가.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 | 96 |
| 나. 런던청년시민 기금(Young Londoners Fund) | 99 |
| 다. 문화 씨앗 기금(Cultural Seeds) | 99 |
| 라. 꿈 응원 펀드 | 99 |
| 2. 조례 개정안 도출 | 104 |
| 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 104 |
| 나.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108 |
| | |
| 참고문헌 | 109 |
| | |
|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관리자) | 113 |
| 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활동가) | 115 |
| 부록 3. 토론회 자료집 | 117 |

표 목 차

| | |
|---|-----|
| 〈표 3-1〉 시민사회의 법적 정의 | 9 |
| 〈표 3-2〉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비교 | 11 |
| 〈표 3-3〉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예산 | 14 |
| 〈표 3-4〉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5 |
| 〈표 3-5〉 FGI 조사 개요 | 20 |
| 〈표 3-6〉 FGI 설문 문항 | 21 |
| 〈표 3-7〉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FGI 결과 | 22 |
| 〈표 3-8〉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FGI 결과 | 24 |
| 〈표 3-9〉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FGI 결과 | 26 |
| 〈표 3-10〉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FGI 결과 | 28 |
| 〈표 3-11〉 최근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FGI 결과 | 30 |
| 〈표 3-12〉 시민단체 내부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에 대한 FGI 결과 | 32 |
| 〈표 3-13〉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34 |
| 〈표 3-14〉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36 |
| 〈표 3-15〉 유관기관 협조 관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38 |
| 〈표 3-16〉 시민단체 성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 40 |
| 〈표 3-17〉 기타의견에 대한 FGI 결과 | 42 |
| 〈표 3-18〉 FGI 결과 요약 | 45 |
| 〈표 4-1〉 잉글랜드·웨일즈 자선단체 연간수입 상위 10개 기관(2023.1) | 50 |
| 〈표 4-2〉 런던시 자선단체 현황 | 75 |
| 〈표 4-3〉 「꿈 응원 펀드」의 조성 사업 실적(2012-2022) | 93 |
| 〈표 4-4〉 런던, 도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 비교 | 95 |
| 〈표 5-1〉 「꿈 응원 펀드」의 조성에 있어서의 특징(2012-2022) | 101 |
| 〈표 5-2〉 시장의 책무 중요도 현실화 | 104 |
| 〈표 5-3〉 지원 대상 명확화 | 105 |
| 〈표 5-4〉 민관 협치 및 소통·협력 강화 | 106 |
| 〈표 5-5〉 센터 위탁 취소 조항 신설 | 107 |
| 〈표 5-6〉 공익사업선정위원 구성 공개 및 셀프 평가 금지 | 108 |

그림 목 차

| | |
|---|----|
| <그림 3-1>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체계 | 11 |
| <그림 3-2> 민간단체 비교표 | 12 |
| <그림 3-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공개표 | 16 |
| <그림 3-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 17 |
| <그림 3-5> ‘시민사회’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 18 |
| <그림 4-1> 런던시 홈페이지 시민사회 지원 부문 | 51 |
| <그림 4-2> 런던 시민의 힘 지수 지표 | 54 |
| <그림 4-3> 도쿄도 NPO 수의 추이(2002-2022) | 59 |
| <그림 4-4> 도쿄도 내 구시정촌의 NPO 지원·협업에 관한 시책의 실시 현황 | 62 |
| <그림 4-5> 도쿄도 협업의 추진방침 개요 | 67 |
| <그림 4-6>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 72 |
| <그림 4-7> 런던시 자원봉사 웹사이트 | 74 |
| <그림 4-8> 상기 관련 예산표 | 84 |
| <그림 4-9> 영화5년(2023년) 도쿄도 생활문화 스포츠국 예산안 | 90 |
| <그림 4-10> 2023년 꿈 응원펀드 선정 심사 위원명단 | 92 |
| <그림 5-1> 시민사회뿌리기금 설명서 이미지 | 98 |

1. 서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서울시와 해외 지방정부(런던, 도쿄)와의 비교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살펴보고,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시민단체들이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은 이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시민단체의 관리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복지원, 부정지원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며 지원과 관리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이제까지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 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큰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이미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런던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과 우리와 비슷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정책과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제공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안의 방향성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이제까지 유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단지 국내의 시민단체 지원현황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들이 많아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받는 지원의 사례분석은 많이 이뤄져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어떠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까지의 관리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부분에 있다. 시민단체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의 방식과 지원의 재원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에는 잘 전달이 되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단순히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단체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정책 전반과 이와 유사한 런던,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전반이다. 우선 서울시의 시민단체 상황을 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민간 보조 및 위탁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2022)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0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 필요한 행정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2022년 3분기 기준 총 2,389개로 중앙정부, 지자체 합계의 약 15%, 지자체만 기준으로 하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9월 취임 이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이 1조 원에 달한다며 잘못된 부분과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살펴보면 2000년 1월에 제정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 그것이다. 같은 법안은 이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에 법률로 지정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법률적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차이에 주의하며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지원, 관리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부정 수령으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은 단체가 같은 해에 행안부·서울시 양쪽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해 여러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그 지적사항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부담 폐지 부활 여부 문제와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강하게 지적되었고 구체적 사례로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 실형을 받은 김민웅 대표의 ‘서울 겨레하나’가 행안부 지원을 받으며 현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고, 중고등학생들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다시 1,6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이어 2022년 12월 28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의 연구가 없었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술논문으로는 시민단체 지원이나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지 2021년 발간된 민경선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2022년 나온 정상호의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 관련법과 현황을 중심으로’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이다. 민경선의 연구는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에 주목한 연구이고 정상호의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았던 시민사회에 대해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을 비교하고 있어 서울시를 위해 런던과 도쿄를 비교하는 본 보고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시민단체(혹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및 관리에 대해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공론화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런던과 도쿄의 지원정책 및 관리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 실제로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연구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에 블레어 노동당 장기정권이 교체될 때 보수당 당수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에 의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관리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2010년에 ‘Supporting a Stronger Civil Society(더 강한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보고서가 이미 발간되고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이 주관하여 개혁이 주도되었다. 2015년에는 런던시 정부의 요청으로 The Change Ahead -Creating a new future for civil society in London-(앞으로의 변화 -런던 시민사회의 새로운 미래 만들기-)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장기집권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왔을 때 대대적인 관료사회 개혁과 예산 재정비를 통하여 낭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전면적인 시민사회 지원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혁 이후의 런던과 도쿄의 시민단체 관련 법안과 지원 상황의 개괄적인 전반 현황을 자세

히 서술하고 시민단체 지원,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어느 곳인지도 밝히며(영국의 경우는 지방행정 구조가 독특하여 중복된 관리권의 설명이 필수다) 공개 중인 최신 예산과 관련 법령 등의 서술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인 세 지방정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은 문헌 및 환경 분석이다. 이 서론에 이어지는 II장에서 문헌 및 환경분석을 통하여 이제까지 유사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선행연구들의 연구 중 인용, 계승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이번 연구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어서 현재의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 제도 체계의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지원조직, 지원 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현재의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IV장에서부터는 이 연구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적 벤치마킹 사례인 런던과 도쿄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을 비교하는 장으로서 세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담당 조직 및 제도를 비교하며 각각의 지원 예산 규모와 집행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각 도시 지방정부 별 차이점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V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진단과 제언의 장으로서 런던과 도쿄의 사례 중에서 우수 해외 사례 설명 및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연구의 심화를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위하여 문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시와 해외 지방정부(런던, 도쿄)와의 비교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질을 담보하였다.

3. 연구의 방법

그러면 연구의 방법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위 내용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문헌연구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조사, 해외 우수사례 연구, 전문가에 대한 심화 인터뷰, 이를 통한 종합적인 조례 개정안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는 기존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런던, 도쿄의 시민단체 지

원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한다. 현황조사는 서울시의 현황은 물론 런던과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정책 및 관리정책의 개괄, 담당 조직 및 제도, 지원예산 규모와 집행관리 방안, 마지막으로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이에 더하여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런던과 도쿄의 우수 지원 사례를 제시하였고 실패한 결과가 있다면 이도 가감 없이 제시하였다.

전문가 심화 인터뷰는 연구진이 엄선한 국내의 관련 연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단순히 문헌과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는 연구를 지향했고 연구보고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과 엄격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기획과정에서부터 연구진 및 정책 자문진 구성, FGI 진행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반에 걸쳐 시민단체 정책에 관한 현장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 단순히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단체 현장과 같이 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II.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그러면 선행연구들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민간 보조 및 위탁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2022)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제정 당시부터 여러 문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를 통한 수행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재정적 지원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2011년 이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률안까지 별척 조항은 꾸준히 강화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 이에 더하여 현재의 지원, 관리정책에 대하여 총액 제한이나 지원사업 수 제한 등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받지 못하는 새로운 비영리시민단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종합평가가 미흡할 시 일정 기간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보아도 이 보고서에서 문제 제기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문제 시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민경선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을 보면 비영리단체가 2021년 기준 15,051개가 존재하며 지원의 체계성이나 규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역시 투명성의 문제로 연결되어 기부자 측면에 장기적으로 문제점으로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자 측면에서는 기부금 등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를 기부자 측면에서는 내부 및 외부 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운영자 측면에서는 투명성 개선역량 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경선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현실화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부를 반영하여 의원 발의를 한 상황이지만 국회의 통과를 거쳐 법제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첨예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이 연구로 이미 국내의 비영리단체 특히 기부금 관리에 있어서 이미 문제 제기과 해결책 제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계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1) 김건훈, 2022. 요약문

이어서 본 보고서와 유사한 또 하나의 선행연구로 정상호의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법과 현황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동아시아 3개국 한-중-일의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본 연구는 세 나라의 시민단체(NGO)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즉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 해당 법률이 포괄하는, 정부에 의해 등록·인증된 단체의 현황(한국은 15,460개, 중국은 894,162개, 일본은 50,860개)과 분포, 활동 분야 등을 살펴본 연구이다(정상호 2022). 이 연구를 통해 정상호는 동아시아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NGO)와 관련된 핵심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온 시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증가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라는 ‘위로부터의 필요’가 법 제정의 동인(動因)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정상호는 세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라는 행정개혁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밝히고 차이점도 지적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인허가의 행정원칙과 관련하여 일본은 행정권의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인가제를, 중국은 엄격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간수준인 인증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제를 병용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비영리단체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영리사업의 원칙적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은 수익사업의 부분적 허용(사업형 NPO)이라는 다소 유연한 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²⁾

시민단체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운용 과정의 차이도 서술하고 있다. 일본은 시민단체(NGO)의 불인증 비율은 낮지만, 취소 및 해산율이 높다. 이는 인증이나 특례인정 단체로 지정되는 진입장벽은 높지 않지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제법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이중관리 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 비준 절차에 중점을 두어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을 설정하는 반면,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은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의 지정은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기부와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규제가 있어 기부금품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호는 향후의 과제로 세 나라의 관련법의 제정은 법률이 포괄하는 시민단체(NGO)의 양적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단체 수의 증가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나 지속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며, 지원 법률의 존재나 확대가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약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법과 제도가 시민사회의 생태계, 특

2) 정상호, 2022. 17(1): 32.

히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연구가 부족함을 앞으로의 과제로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해외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외 연구들에서는 의외로 시민단체의 지원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개선방안보다는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해외의 연구들은 그 나라의 특수성에 착안한 연구들이 많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선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단체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

그리고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이 존재한다. 시민단체, 민간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의 용어가 국내에서 쓰이는 의미와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본 보고서에서 추진하는 영국의 런던과 일본의 도쿄를 비교하는데도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일본의 경우 JICA(일본국제협력기구)가 정한 개념에 따르면 NGO가 주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NPO는 “국내의 지역 수준(community level)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NGO가 아닌 NPO가 급증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국내에서 연구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앞의 선행연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에 문제가 없는 시민단체 개념 (NGO)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이러한 제한이 런던과 도쿄의 현황을 비교할 때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 즉 일본에 있어서의 NPO는 우리의 NGO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기부금 운영이나 시민사회의 부패에 대해 문제점을 상당히 오랜 기간 인식해 왔었으나 이를 시정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3개국을 비교하는 선행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리체계가 유사하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장단점을 명확하게 도출하고 이제까지의 문제점과 한계를 재검토한 후에 우수한 해외 사례가 존재하면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되게 지적된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이어서 현재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3) 민경선, 2021, 26(4): 272.

Ⅲ.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의 현황

1. 국내 관련 법·제도 체계 현황

가. 중앙정부 차원

시민단체, 혹은 시민사회단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령은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 발의된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이하 시민사회기본법안)에서 처음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가 등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 법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시민사회’를 “시민과 시민사회조직(법인, 단체 등)이 시민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의되어 계류 중인 3건의 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안)도 시민사회를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3-1. 시민사회의 법적 정의〉

| 법안·조례명 | 제안자 및 제정일 | ‘시민사회’ 정의 |
|----------------------------------|--|---|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 진선미 의원 등 10인(2021.01.11.) |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민형배 의원 등 13인(2021.02.15.) 서영교 의원 등 10인(2021.08.09.) |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종검색일: 2023.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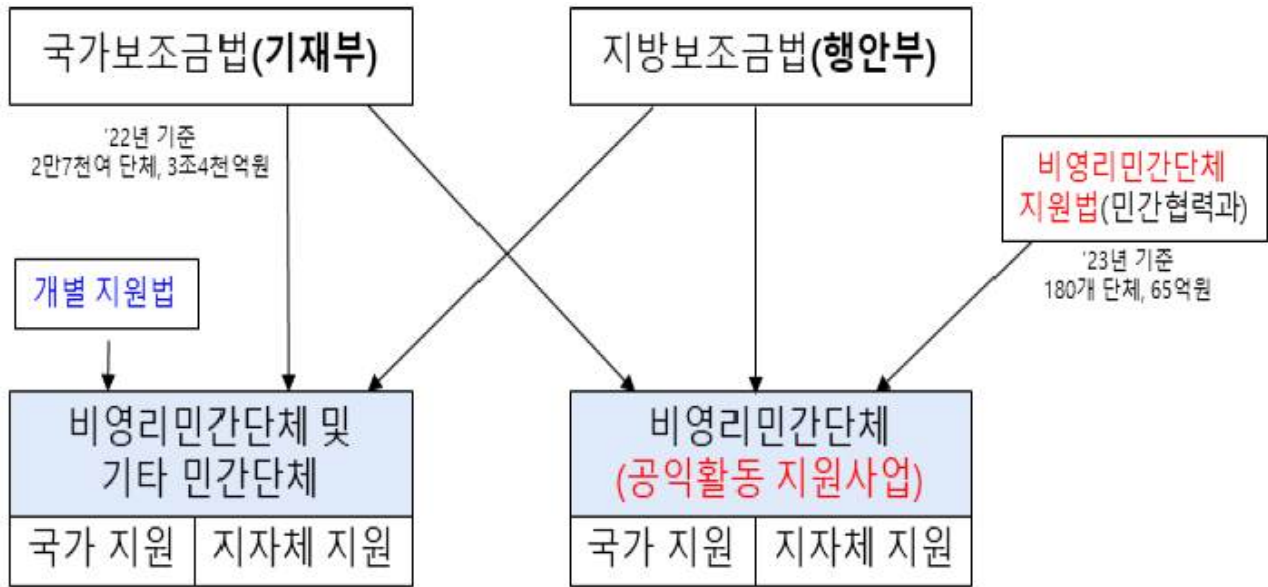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훈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그 영향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자치법규 수준을 넘어서는 명시적 법령에서 ‘시민사회’, 혹은 ‘시민단체’를 규정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

으며, 현재로서는 개별 법령의 조문에 ‘시민사회단체’ 라는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역할과 주체성을 인정받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의 정의대로 ‘시민사회’ 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민단체’ 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 정비가 미흡한 만큼 시민사회조직에 대해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통계자료 역시 부재하다. 관련한 통계로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의 ‘비영리기업’ 분류와 한국은행 국민총생산기여도의 ‘민간비영리서비스단체 분류’ 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통계는 종교단체, 정당, 노동조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통계청의 자료는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시민사회조직의 범주와 일치시키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통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줄곧 있었으나 비정기적이고 산발적인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시민사회조직 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조직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시민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목적(제1조)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발전에 기여” 함을 명시하였다. 2개 이상 시·도에 사업 범위가 걸쳐 있고,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 등록 대상이 아닌 그 외의 단체는 광역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에 1,754개, 시·도에 13,823개로 총 15,577개가 있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우편요금 25% 감면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지원법」은 국가가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 3-1.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체계〉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2023.08.4)

〈표 3-2.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비교〉

| 구분 | 민간단체 대상 일반보조금 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회, 연맹, 복지시설 등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약 1,754개)* |
| 2022년 지원규모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기준) | 3조 4,500억원 | 65억원 |
| 적용 법률 | 각 기관의 개별법, 보조금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법 |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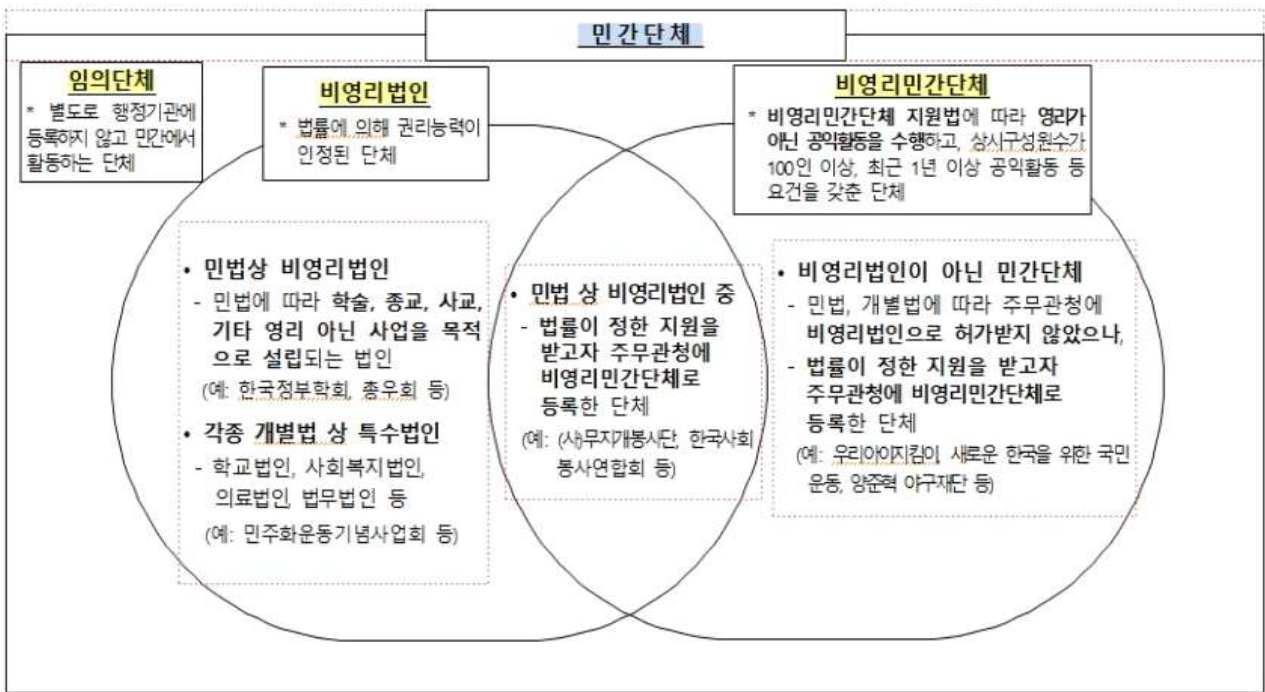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2023.08.

4) 2023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변경으로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이 폐지되고 지방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규모가 축소된 만큼 소관 사항의 업무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영역이 분화·발전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향과 조직 방식을 지닌 주체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⁵⁾ 그러나 최근 탈이념적 사회서비스형 단체의 활동에 비해 특정 지향을 지닌 주창형(advocay)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정치 편향성 의심 등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법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공익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수립·집행된다.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림 3-2>의 민간단체 비교표를 통하여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구분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성격에 따른 지원과 관리 정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발전을 향한 주요 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현행법에 대한 제·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림 3-2. 민간단체 비교표>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균형 발전실. 2023.08.

5) 박영선·정병순, 2020. PR(47).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시민사회 활성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로 정의된다. 즉, 시민사회 활성화제도 또는 정책이란 시민과 조직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위한 토양 구축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관련한 법적 환경은 크게 시민적 권리에 대한 보장, 시민사회의 등록, 주창 활동의 허용, 기부 행위에 대한 조세 혜택 등으로 측정되는데,⁶⁾ 시민사회 행위자에게 규제 중심의 법적 환경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친화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시화되고, 실효적인 정책 방안이 담긴 법제가 마련된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강력한 정책 환경을 갖추게 되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⁷⁾ 결국 시민단체의 탄생과 발달 상황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결과로서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하기 때문이다.

나. 서울특별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하여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 5월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서울시와 의회의 역할보다는 중간지원조직(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서울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위한 가치와 방향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5월 대통령 훈령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5일 전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692호)된 이후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제3장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등 총 3장 19개 조 체제에서 현재 제1장 총칙,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

6) 조영재, 2006.

7) 이환성 외, 2021. 194-196

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5장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총 5장 26개 조로 확대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위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동 조례 제18조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서울시는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조례 제13조에 근거,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23년 현재 비영리법인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운영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2014년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던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교부받아 운영되는 조직이다.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센터 운영예산은 다음의 <표 3-3>에서 보듯이 21억 원에서 24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22년에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23년 예산의 경우, 권역NPO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 복구비가 포함된 예산이므로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예산>

(단위 : 백만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2,393 | 2,403 | 2,155 | 1,623 | 1,879 |

출처: 2023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예산(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09322&tr_code=sweb). 최종검색일: 2023.09.12.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매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실시하고 있다. 매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사업과 시정책사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을 선정하고자 지원사업 분야를 공고한다. 최근 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표 3-4>에 적시된 바와 같다. 이전에 10개 이상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 분야가 2022년부터 4개, 6개로 축약되어 공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4.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연도 | 세부 사업유형 |
|-------|---|
| 2018년 | (12개 유형)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 |
| 2019년 | (13개 유형)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교통·안전,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지원,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NPO활동지원, 기타 공익사업 |
| 2020년 | (11개 유형)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교통·안전, 장애인복지·인권신장,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안보, 문화·관광도시,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시민의식 개선, 기타 공익사업 |
| 2021년 | (11개 유형) 기후환경·자원순환,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교통·안전, 시민의식 개선,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문화·관광 도시, 기타 공익사업 |
| 2022년 | (4개 유형) 복지, 문화·관광, 건강·안전, 시민·공익 |
| 2023년 | (6개 유형)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최종검색일: 2023.09.12.

사업 신청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며, 사업의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 공모사업을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직전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 단체와 직전년도 지원사업에서 종합평

가 ‘미흡’ 평가를 받은 단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선정된 단체는 심사 배제 대상이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면 즉시 선정이 취소된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 공익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년을 임기로 하는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1차 70%, 2차 30%의 사업비를 분할 교부받게 된다. 중간평가 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중간평가 결과 ‘미흡’ 단계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2차 교부금이 중단되고 미흡 사항이 보완된 후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최종평가는 S, A, B, C 등급으로 매겨져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공개된다. 다만, 선정에 참여한 선정위원이 당해 사업의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심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림 3-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공개표>

|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 | | | | |
|--------------------------------|-----------------|-----|-------|--|------------------|
| 연번 |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유형 | 사업명 | 종합평가등급 (정산포함) |
| 1 | 1549 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 | 박성철 | 복지 | 멘티가 멘토로 '다시 쓰는 한부모 동료 멘토링' | A |
| 2 | 1318상상발전소 | 박상용 | 문화·관광 | 전지적 청소년 시점(청소년 중심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 S |
| 3 |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 박정하 | 복지 | 서울특별시 거주 탈북민의 복지지원제도 설명회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안내 | S |
| 4 | 6.25공원국민운동본부 | 한상대 | 건강·안전 | 폭격으로부터 지켜낸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나다 | A |
| 5 | S&Y도농나눔공동체 | 문대상 | 건강·안전 | 기후위기 속 꿀벌과의 공존과 상생 | S |
| 6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 조희금 | 시민·공역 | 유튜브 및 메타버스 활용 민주적인 시민의식 강화 사업 | C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gov/files/2023/02/63da256fd0fbe8.87593443.pdf>). 최종검색일: 2023.09.12.

2.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2020년 5월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0월 폐지되었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이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도기사 1,991건을 대상으로 하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핵심 이슈가 보조금, 사업비, 부정수급, 지원대상, 전액 환수 등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합하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기간 ‘시민사회’에 대한 보도기사 19,235건을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단체, 민주주의, 활성화, 협치, 정부파트너십 등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익활동증진, 정부파트너십, 간담회 등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모두 강조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정부와 시민단체가 감시와 억압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출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데이터 활용 및 작성

〈그림 3-5. ‘시민사회’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출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데이터 활용 및 작성

현재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은 시민사회 활동 증진 규정의 폐지, 보조금의 축소 등에 따라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약화,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기반 축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하였다.

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이슈 도출을 위한 FGI 설계

본 심층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 셋째,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기 위함이다.

인터뷰 대상은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간관리조직 관리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하였다. 분야별로는 인권, 젠더, 교육, 환경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10년 이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크게 역할 및 업무, 대내외 환경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세 가지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역할 및 업무 영역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혹은 영향을 받는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업무를 질의하였다. 두 번째로 대내외 환경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외부요인으로 최근 시민단체 지원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변화, 내부요인으로는 시민단체 지원 업무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역은 1) 일반적 제약 요인 2) 법·제도적 측면 3) 협력 및 소통 측면 4) 성과관리 측면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3-5. FGI 조사 개요>

| | |
|-------------|--|
| 조사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관리자 ▪ 서울시 시민단체 활동가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 배포 후 서면 인터뷰 |
| 조사기간 | 2023. 8. 12. - 2023. 8. 24. |
| 조사범위 | 서울시 |
| 조사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할 및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단체의 역할 및 업무 ②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업무 2) 대내외 환경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요인 ② 내부요인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적 제약 요인 ② 법제도적 측면 ③ 협력 및 소통 측면 ④ 성과관리 측면 4) 기타의견 |

<표 3-6. FGI 설문 문항>

| | |
|-----------------------------|---|
| <p>1. 역할 및 업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귀하가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 <p>2. 대내외 환경요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민단체 지원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는 무엇입니까? ▪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p>3. 문제점 및 개선방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단체 지원업무에 대한 정부, 서울시, 유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 관계는 어떠합니까? 적절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단체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p>4. 기타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한 내용 이외에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나. FGI 조사 결과

1) 역할 및 업무

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지목하였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활동이 시민들의 삶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시민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3-7.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할 ▪ 의제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의 주축이 되는 단체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입안자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사회문제 고발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새로운 정책 아젠다 발굴 및 확산 ▪ 서울시 및 기업의 불합리한 활동 감시 ▪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개발 및 행동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별 설립목적에 부합한 또는 활동 분야, 지원대상 등에 적합한 목적 사업 추진 ▪ 정부 기관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영역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해결 노력,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제언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시행, 감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및 제언 조직 |

| | |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환적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조직 ▪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조직 ▪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에 따라 구성원들이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는 것 ▪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며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한 역할 ▪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의 방법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것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 범죄와 악질적인 민원으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참담한 사회 상황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조직 ▪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역할 ▪ 이를 위해 복지 시스템을 법적 제도화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 |

나)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각 분야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채널 구성, 서울시 및 소속 기업과 이익단체의 부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포럼, 토론회, 집담회 등을 조직하여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업무가 중요하다. 또 정치적 액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의 어드보커시 활동과 여론 조성, 재정적 독립성 제고를 위한 역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시민단체의 업무로 파악되었다.

〈표 3-8.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사회, 정치, 문화 등 전문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유하는 행동으로 포럼, 토론회, 집담회 등 소통 채널을 만들고, 모아진 의견에 따라 기사보도, SNS 등으로 알리고,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캠페인, 설문조사, 소송 등) 추진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입안자들이 발굴해 낼 수 없는 의제들을 발굴 ▪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기업의 부정, 권력 감시 ▪ 정책 대안 개발 ▪ 집단행동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대안적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 시민들의 관심 확대를 위한 어드보커시 활동 등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책 활동에 대한 감시, 방향 제시 등 ▪ 서울시 소속 기업 및 이익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 등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으로 건전한 독립이 매우 중요함. 우리나라 현실상 기부금만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모델을 구성하고 그 수익모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춰야 함 ▪ 시민들 일상과 밀접하게 고민하며, 그 활동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는 업무 |

| | |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는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익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함 ▪ 시민들의 생각을 조사하고 이를 각 부문에 전달하는 역할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생산과 선순환적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운영방식과 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의 방식을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사업 방향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함이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와 비전을 공유하며 목적을 명확히 드러냄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공존 등 바람직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인을 아우르는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 |

다)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시민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라 고유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강화에도 주목하였는데,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정권 변화에 따라 시민단체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3-9.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하는 시민단체 고유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 ▪ 회계 관리의 정합성 유지 ▪ 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시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시민단체의 목표가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보완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재정지원 ▪ 시민단체 간 연대 및 조직화 지원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협업 및 소통과 시너지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채널 역할 ▪ 시민단체를 통한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 시민단체 활동 확산 및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정부 정책의 사이에서 소통을 통한 조율 및 실질적 방향 제시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규모적 경제를 갖출 수 없는 시민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 가장 주요함 ▪ 단체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 ▪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항상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과 독창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 | |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적절한 경제적 지원 ▪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 ▪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는 구조를 구축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가 발전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혹은 입법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 ▪ 시민들과도 연결해주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해주는 역할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금전적 지원 ▪ 정권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용 등이 삭감되지 않게 조정하는 역할 |

라)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계획, 회계 지침 등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시민단체 인큐베이팅을 위한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외부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안내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업무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또 시민단체가 스스로 활동 방향을 점검하거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10. 중간지원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사업 및 예산계획을 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회계 지침 수립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질의응답에 대응 ▪ 사업·회계 평가 및 정산과정 준비와 시행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평가를 위한 평가안 마련 ▪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등 활동 지원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 활동 지원 및 컨설팅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금지원, 공간지원,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네트워킹 등) ▪ 시민단체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매뉴얼 제작 ▪ 시민단체 활동 확산, 소개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 정책 참여 유도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외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안내 ▪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 시민단체가 관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 | |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과 지원의 취지를 이해 ▪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제공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개설 및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연결 ▪ 시민단체 스스로 성과측정과 활동 방향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관계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2) 대내외 환경요인

가) 최근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요한 시민단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부환경으로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꼽았다. 기 시행된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시민단체 지원 관련 예산도 급격하게 삭감된 점을 우려하였다. 또 시민단체가 지원금을 오용하고 반정부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왜곡된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3-11. 최근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행안부 주도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최근 5~7년간 보조금 모니터링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압박적임 ▪ 중간지원조직에서 과거 내역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해당 단체에 확인하게 되는 상황에서 단체에서 억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임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정권교체, 자치단체장 교체 등 시민단체 지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의 변화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반정부 조직 인식 확산 ▪ 시민단체 지원 예산 및 조직 축소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설정, 이에 따른 예산 확보 ▪ 기 시행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 시민단체 관련 사회 이슈(책무성 및 투명성 관련 부정적 뉴스 등)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기조 변화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 등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이면에 있었던 다양한 환경, 부정부패 등의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민사회는 정부와 거버넌스를 이루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비약적으로 성장함.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적 지원이 정치 환경 변화로 중단되자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며, 결국에는 정치적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됨 |

| | |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 예산삭감 ▪ 중간지원조직의 갑작스러운 폐쇄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지원사업의 변화(지원금, 예산, 교육, 멘토 프로그램) ▪ 시민단체 활동은 일회성 혹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이 필요로 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원이 달라진다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움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업 편향성과 시대에 맞지 않는 방향 ▪ 정부의 성향에 따라 변경되는 예산 항목 ▪ 운영법령과 세법의 변화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 활동의 어려움 ▪ 정권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나) 시민단체 내부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내부의 강점요인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점을 꼽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자유로운 조직 구조를 갖추으로써 보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참여한다는 데 시민단체의 강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시민단체 내부의 약점요인은 예산 부족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공공의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이지만 적절한 규모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담당자 역량의 편차가 큰 점 등이 시민단체 내부의 약점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3-12. 시민단체 내부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에 대한 FGI 결과〉

| | 강점요인 | 약점요인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인적자원 및 조직자원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민간의 자유로운 사업추진 방향과 내용 간접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련 이해도가 낮음 단체 담당자 개인 역량 지원 사업 지침 정교화 여부에 따라 사업 운영 강도가 좌우되는 경향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에서 발휘할 수 없는 창의력 발휘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성격이 다양함에 따라 적절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 집행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원업무에 어려움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예산 확보를 통해 단체 활동 지원 시민단체 및 조직의 안정적 성장 지원, 역량의 상향 평준화 조직 간 연계 강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규모가 적음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움 인큐베이팅 지원 후 실질적 자립 어려움 |

| | | |
|--------------------|---|--|
| <p>관리자D</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문제, 현안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다양한 의견 반영 ▪ 정부기관의 개입이 어렵거나 미치지 못하는 현장 및 시급한 이슈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연속성(정책방향, 담당자 등 변경 가능성) ▪ 파트너 단체의 연속성(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짧은 근속, 환경 변화 등) ▪ 현장의 요구와 행정절차 간의 괴리 |
| <p>관리자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단체를 통해 조직적 시민 참여 이끌어 낼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행정업무로 상호 업무 효율성 저하 ▪ 예산 사용에 대한 상호간 신뢰 부족 ▪ 단체 선정 시 공정성에 대한 공격 |
| <p>관리자F</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벼운 조직 구조와 뚜렷한 목적 의식, 소명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재정구조,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 |
| <p>관리자G</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 ▪ 헌신적인 인력, 기술력을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는 전문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정과 헌신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편임 |
| <p>활동가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율성 ▪ 공공의 선과 공공의 가치를 위한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시민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독점 ▪ 특정 시민단체가 활발할 수 있는 구조 ▪ 신생 시민단체들의 활동 제약 |
| <p>활동가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궁극적 비전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 ▪ 자발적으로 모여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공동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안정과 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가치와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려고 노력 하지만, 외부에서는 '함께'하는 영역이 아닌 시민단체만의 업무로 인식 |
| <p>활동가C</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를 아울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회적 자산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 변화에 따라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동비 등 예산 삭감으로 운영 악화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예산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축시키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민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관된 지원이나 성과평가, 지원을 위한 과도한 행정 업무 발생, 시민단체의 행정력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지원업무의 틀을 유지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분야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선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과도한 행정업무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 혹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표 3-13.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의 근거, 목적, 방향성 등에 따라 사업 간의 차이가 크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로 지원 근거나 결과를 평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원업무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각각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개별 지원 사업별 계획에 따라 맞춤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보조금 지원사업의 필수적인 업무사항을 지정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업무에 반영해야 함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부족 시민단체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예산 집행 및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증액 시민단체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 및 보급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지원 확대 |

| | | |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정책 및 예산의 불확정성과 변동 가능성이 큼 ▪ 시민단체의 행정력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의 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행정처리 관련 별도의 전문인력 지원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항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 ▪ 지원 시 양측 모두 과도한 행정업무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항목의 자율성 보장 ▪ 행정 업무 처리의 편의성 증대(전용 카드 지급을 통한 바로 정산 시스템 등)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되지 못한 지원 정책 ▪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기부금 제도의 허술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제도를 고도화하고 단체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 ▪ 적절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 전환을 위한 일관된 정책 환경 필요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위축되는 것이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기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 필요 ▪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예산 삭감 부적절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정책(지원금, 시민단체 교육, 협업할 수 있는 행정부서와의 연결 등)의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는 매우 소규모 그룹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 혹은 행정부서를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확대될 필요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확보 및 사용의 어려움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분화 된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공간들이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도 활용 가능해야 함 ▪ 성과측정 사항에 사회적 기업이 아닐지라도 모든 활동에 사회적 가치창출 영역이 있어야 함 ▪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필요 ▪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지연 및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 등 예산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법적으로 '시민단체 활동비 지원 의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화 필요 |

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원 단체 선정의 불투명성, 지원 예산 부족,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지적하였다. 선정 심의위원회의 경우 참여위원의 전문성이나 심사지표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원예산이 적어 지원 대상이 소규모인 점, 중복 및 연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나 목표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연속지원 불가 방침보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지표 개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포함,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시민단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지원사업보다 분야별로 특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양적지표로 한정된 성과평가를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3-14.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이 모호함 선정관련 심사지표가 합리적인지 점검 필요 지원 보조금 규모가 작거나 애매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원 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인씩 포함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예산 부족, 선정 근거의 불명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한 수준의 예산지원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단체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예산 규모가 작아 지원 대상이 소규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단체 선정기준 완화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대상 확대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사업이나 행사 중심의 지원 사업 및 관리 중심의 운영정책 중복, 연속 지원 필요시 객관적 평가 및 목표 미흡(사업 특성상 무조건적 연속지원 불가방침 보다는 객관적 평가와 기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사업 또는 정책 추진시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수립 단기 또는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생태계를 위한 사업지원 이상의 인력, 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 | | |
|--------------------|--|---|
| <p>관리자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지원보다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비하는 정책지원이 대부분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 확대 필요 |
| <p>관리자F</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된 재정에 대비 과도한 성과 요구 ▪ 정치 환경에 따른 지원 단체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 단체의 성장보다는 단순 지원형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지원 사업 심사기구가 필요하며, 정권 변화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사와 컨설팅이 필요 |
| <p>관리자G</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단체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 중복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관리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자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적절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 ▪ 양적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 산정이 어려운 임팩트를 측정하는 다양한 틀을 고민해야 함 |
| <p>활동가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계획안을 선공개하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시민단체의 분야에 따라 담당자들을 구체화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필요 |
| <p>활동가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소속으로 등록하려고 하지만 등록은 개수를 채우기 위함인지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 관리의 목적 명확화 ▪ 목적에 맞는 단체들과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는 관계라는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 지원할 때 단체가 해야 할 일과 지원 결과 이뤄야 할 것들에 대한 명시가 명확해야 함 |
| <p>활동가C</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삭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 등 예산이 유지되어야 함 |

다) 유관기관 협조 관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와 서울시 혹은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협조 관계에 대해 소통의 창구가 부족하거나 부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 있는 협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방적인 소통 시스템으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인력 증대 등도 미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편파적 지원 등을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 내 소통 인력을 증대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 간 소통창구 확대 필요성이 1순위로 제안되었다. 시민단체와 중간조직, 서울시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개발하거나 의사소통의 정례화 등도 제안되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환 주기를 늘리고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담당자들이 시민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15. 유관기관 협조 관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창구가 없거나 부족하고, 시민단체 지원하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 파악만 하기에다 벽차함(1년에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 이상 담당공무원 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지원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공무원 업무 전환 주기를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될 시 해당 지원사업의 총 운영 기간도 늘릴 수 있도록 함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중간지원조직 간 일방적 소통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중간조직-서울시 간 협의체 개발,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 시민단체 간 네트워킹 창구 마련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지원조직이 제안한 운영 개선 요구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 지원 단체 다양성 및 규모 확대 시 인력 증대 미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신뢰 제고 사업 규모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도화(지침 반영)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별 일부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지원 범위와 영역에 대 |

| | | |
|------|---|--|
| | <p>으로 사업 단절 또는 소통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한 관계 설정(정부기관의 일방적 소통 혹은 시민단체가 적절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 등) | <p>한 명확한 기준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사례 적극 발굴 및 확산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에서 단체와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내 소통 인력 증가 (단체별 이슈 다양) ▪ 전문가 배치 등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 지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또는 지원단 구성 필요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의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 담당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필요 ▪ 시민단체 지원이 세금 낭비가 아니라는 점 상기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창구의 부재 ▪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및 강화 필요 ▪ 성과 평가지표를 고안할 필요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통의 여부가 결정됨 |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서울시-중간지원조직 등 모든 영역의 소통 미비 ▪ 소통 창구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서울시-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라) 시민단체 성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분야별 공식적인 평가지표가 부재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선정부터 평가까지 일관성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선정 및 평가 과정이 공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뷰어 전원이 지적한 바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 시민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양적지표가 해당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식 및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다수였다. 즉,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선정부터 평가까지 연속성 있는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성평가 혹은 그 외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컨설팅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표 3-16. 시민단체 성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FGI 결과〉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부터 평가까지 관리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표 부재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성 및 과정에 대한 주체들의 이해가 부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 선정·평가지표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선정부터 평가까지 사업 내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로 방만한 경영 초래 무엇이 이들 단체의 성과인지에 대한 불명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마련 |
| 관리자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성과관리 행정(정량 성과 지양 필요) 평가 보다 컨설팅 목적의 평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 마련(정성 평가 중심)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객관적 평가지표나 시스템 부족 단기적 사업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또는 정책 추진시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수립 추진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 설정과 평가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 운영 |

| | | |
|-------------|---|---|
| 관리자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만 할 경우 제대로 된 평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특성에 맞는 정성 및 정량 평가 도입 ▪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의 평가 필요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장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반면, 보조금 특성상 1년 내에 성과를 내야하는 한계가 있음 ▪ 성과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식 및 시스템 부족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성과관리 인식 제고 및 시스템 지원 ▪ 단년도 보조사업에서 민간이 지원하는 형태의 중장기 프로젝트형으로 확대 |
| 관리자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고 성과지표 역시 헛수나, 인원수 같은 양적지표에 의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 ▪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필요 |
| 활동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투명하게 보여져야하고, 각기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인 만큼 그 지표가 중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 활동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표준평가지표 없음 ▪ 양적 평가에 의존 ▪ 사업 결과 및 참여자들 반응을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참여자의 심층 면접 등 평가 방법의 변화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기준과 지표 공개 ▪ 평가 결과 통보시 시민단체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단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 활동가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자체 평가의 시스템의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4) 기타의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타의견으로 시민단체의 규모 및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운영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신생 시민단체가 소규모임에도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언급한 것처럼 명확한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결국 사회적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서울시와 중간지원조직이 선제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시민단체의 분야 및 역할을 이해하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할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7. 기타의견에 대한 FGI 결과〉

| | |
|------|---|
| 관리자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단체의 규모 및 유형이 다양한데, 단체 규모와 형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임. 활동의 의미는 크지만 규모는 작은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 구성이 체계적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상근인력 10인 이상 규모의 단체를 기준으로 되어있는 지원사업 운영이 쉽지 않음. 단체 규모별 지원사업 운영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소규모 신생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 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혹은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명확한 목표에 근거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지원금 집행시 해당 성과를 도출해 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함. 또한 감사제도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함 |
| 관리자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건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
| 관리자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시민들의 욕구도 기존의 행정이 모두 포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순수한 시민단체의 목적 및 활동은 인간성 회복에 바탕을 두고 있음. 시민단체가 순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원 방식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 | |
|--------------------|--|
| <p>관리자G</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여론에 기대 지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치를 위해 일하는 행위 자체를 호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음. 지원사업의 선정과 관리에 대해 강력하고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 <p>활동가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행정부, 입법부, 행정기관과 연결하려면 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는 명백함. 중간지원조직이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개발, 행정부 입법부와 연결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어야 함 |

다. FGI 소결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FGI 분석 결과는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자와 시민단체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민단체 사업의 경우 선정과정부터 평가 결과까지 모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때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정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보조금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원인으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실제로 다수의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원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단체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관리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로 관리자의 경우 시민단체의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시민단체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지원 및 관리의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불필요한 성과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단체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보조금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확대, 행정 처리 관련 별도 전문인력 지원,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시민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므로 획일적인 선정기준이나 성과평가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은 선정 기준, 지원 기간, 성과 지표 등 대체로 단일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 이후 성과평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지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상적인 정량지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민단체는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선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수집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해외 주요 지방정부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3-18. FGI 결과 요약>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사업 선정 근거의 불명확성 ▪ 선정부터 평가까지 관리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표 부재 ▪ 단체의 성과 평가의 불명확함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의 문제점 지적 ▪ 심사지표 등 공개적인 점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관리 목적의 명확화 ▪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원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인씩 포함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마련 |
| 연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 예산 및 조직 축소 문제점 지적 ▪ 정권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지원사업의 변화 ▪ 중간지원조직의 갑작스러운 폐쇄 ▪ 일관되지 못한 지원 정책 ▪ 안정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공무원의 잦은 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동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정권 변화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사와 컨설팅이 필요 ▪ 시민단체-중간조직-서울시 간 협의체 개발,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 |
| 전문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관련 이해도가 낮음 ▪ 시민단체의 행정력 부족 ▪ 중복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관리 부족 ▪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업 행정 처리 관련 별도의 전문인력 지원 ▪ 시민단체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등을 개발 및 보급 ▪ 시민단체 인큐베이팅 정책 확대 필요 ▪ 장기적 관점의 사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 문제점 | 개선방안 |
|-----|--|---|
|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근거, 목적, 방향성 등에 따라 사업 간의 차이가 크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로 지원 근거나 결과를 평가함 ▪ 시민단체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 ▪ 지원 단체 다양성 및 규모 확대 시 인력 증대 미지원 ▪ 각기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에 대한 획일적 성과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 업무에 반영해야 함 ▪ 시민단체의 분야에 따라 담당자들을 구체화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필요 ▪ 단기 또는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 ▪ 시민단체 특성에 맞는 정성 및 정량 평가 도입 ▪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의 평가 필요 |

IV. 서울, 런던, 도쿄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비교·분석

1. 각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 개괄

그러면 이어지는 IV장에서는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적 벤치마킹 사례인 런던과 도쿄의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을 비교한다. 현재 런던시와 도쿄도는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각각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단체 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와 서울시에 가져다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먼저 각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관련 정책을 현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에 따른 관련 제도, 지원 예산의 규모와 집행 관리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그러면 먼저 각 나라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런던, 도쿄의 정책을 먼저 소개하고 서울의 현황과 비교하는 형식을 채용한다. 특히 런던시의 정책들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불문법에 기준한 정책들로서 각각의 기금이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나 접근성이 어려운 법률적인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중간단체의 역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쿄는 서울시와 유사한 법체제를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가진 두 도시의 성공사례 비교를 통해 완벽하게 이질적인 유럽적인 모델과 우리와 유사한 동양적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시민단체 지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만 이는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 정책, 관리정책의 배경으로서의 언급이 될 것이다.

가. 런던

런던의 경우는 먼저 영국의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영국 시민사회단체(CSO)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보증책임유한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s), 신탁(Trust) 등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⁸⁾ 시민사회단체 중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charitable CSOs)은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으로 지칭되는 비영리단체는 약 30만 개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또한, 모든 자선단체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등록부(Register of Charities)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자선단체의 지위는 활동이 아닌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활동의 목적이 빈곤 구제, 종교 및 교육 진흥 등과 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자선단체는 오직 자선을 목적으로만 활동해야 하며, 공공정책에 반하거나 회원 또는 설립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경제활동이 허용되지만, 경제활동은 단체의 목적에 부수적이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단체의 자선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또한 자선단체의 경우 관리자 급여에 관한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법인격과 관련 없이 자선단체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은 세법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며 각 단체는 이사의 선임·퇴임·해임, 회의 의결 등 내부 거버넌스에 관한 정관을 보유해야 한다.

자선단체위원회는 단체의 등록, 회계 및 보고, 조사 수행, 위법행위 단속, 자산계획 승인 등 자선단체에 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며 특정 상황에서 법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이한 점은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자선단체는 자선단체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또는 법적 조사에 대비하여 기부금에 관한 충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점이며 자선단체가 명시적으로 자선 목적을 비자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선위원회는 자선단체 등록부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그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선단체와 관련하여 모금을 승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의 자선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역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8) Mary Syng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England and Wales,” Tymen J. van der Ploeg, Wino J.M. van Veen, Cornelia R.M. Versteegh. Civil Society in Europe: Minimum Norms and Optimum Conditions of its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9) 김동춘 외, 2004. 27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은 ‘자선단체’ (charity)을 “자선의 목적으로만 설립되고, 고등법원 자선단체법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¹⁰⁾

자선단체법에는 13가지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자선단체는 또한 아래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구를 기관의 목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 ① 빈곤예방 또는 구제
- ② 교육 발전
- ③ 종교 발전
- ④ 건강 증진 또는 생명보호
- ⑤ 시민권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
- ⑥ 예술, 문화, 유산, 과학의 발전
- ⑦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 ⑧ 인권, 갈등 해결, 화해 증진, 종교적 또는 인종적 조화, 평등과 다양성 증진
- ⑨ 환경 보호 및 개선
- ⑩ 연령, 건강, 장애, 재정적 어려움, 기타 불이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호
- ⑪ 동물 복지의 증진
- ⑫ 왕실 군대, 경찰, 소방, 구조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⑬ 앞의 목적과 유사, 그 정신에 따라 자선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목적

특이한 점은 영국의 대학 대부분은 교육·연구의 목적이 공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선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는 다음과 같다.

10) Charity Commission. “What makes a cha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makes-a-charity-cc4/what-makes-a-charity-cc4>). 최종검색일: 2023.08.29.

〈표 4-1. 잉글랜드·웨일즈 자선단체 연간수입 상위 10개 기관(2023.1)〉

| 순위 | 단체명 | 연간수입 |
|----|---|--------------------------------|
| 1 |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자선단체 지원재단 | £1,044,275,000 (약 1조 8천억 원) |
| 2 | LLOYD'S REGISTER FOUNDATION 로이드 레지스터 재단(공학연구 지원) | £996,514,000 |
| 3 | NUFFIELD HEALTH 너필드 헬스(의료 서비스 지원) | £995,600,000 |
| 4 |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네셔널 | £988,001,224 |
| 5 | THE ARTS COUNCIL OF ENGLAND 영국 예술위원회(예술인 지원) | £941,845,043 |
| 6 | THE BRITISH COUNCIL 영국문화원 | £896,655,974 |
| 7 | CANCER RESEARCH UK 영국 암연구소 | £668,369,451 |
| 8 | THE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OR NATURAL BEAUTY 내셔널트러스트(문화재·환경 보전) | £643,329,000 |
| 9 | CARDIFF UNIVERSITY 카디프 대학교 | £634,167,000 |
| 10 |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COMPANY 국제백신개발지원기금 | £523,659,383 |

출처: 영국&웨일스자선위원회 Charity Commission, “Top 10 charities in England and Wal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sector-data/top-10-charities>). 최종검색일: 2023.08.29.

영국 자선단체 위원회는 등록된 자선단체의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¹¹⁾ 영국 정부는 2015년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 검토보고서(CSOs Partnership Review)를 발표하고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¹²⁾ 이는 2015년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과 사회단체 협력프로그램의 적격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어서 런던시의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런던 지방 정부의 시민단체, 관련 단체에 대한 정책 현황은 런던시의 관련 홈페이지 시민사회 부문에¹³⁾ 전부 공개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의 종류만 관련 데이터, 관련 사업, 예산, 사업 실시 내용, 시민단체 인큐베이터 기능 등 모두 10개의 큰 주제에 달한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시민단체 관련 사업 현황(Civil Society projects)에 주요사업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12개 범주이다.

12개 범주를 차례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그림 4-1. 런던시 홈페이지 시민사회 지원 부문>



11)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 최종검색일: 2023.08.29.

12) 권구순 · 이재원 · 김성규, 2019. 26(1): 138

13) Civil Society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 최종검색일: 2023.08.16.

14) 이하 출처는 13번 각주와 동일

1) 시민사회 미래 프로그램

시민사회 미래 프로그램(Civic Futures programme)은 런던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런던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협업·탐구·탐사·시스템 사고에 중점을 둔 집단 학습과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시민사회가 엄청난 변화 속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런던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드러내고 심화시켰으며, 수도 전역에 존재하는 돌봄, 창의성,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우리의 시스템과 구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재고하고, 재구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활동가와 조직가, 예술가와 큐레이터, 사회적 기업가와 일선 직원, 자선 단체와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와 주변 세계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과 네트워크로 대표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제 3기째 참가자를 모집하는 동 프로그램은 런던의 시민 사회, 지방 정부 및 활동가 들 중에서 최대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소집하여 집단 학습과 발견 경험을 촉진하고 동료들과의 연결, 탐구와 탐사, 시스템적 사고, 협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보면 시민사회의 후속 세대 성장을 위하여 런던시가 행하고 있는 사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장기프로젝트로 3년 차에 돌입한 것을 알 수 있다.

2) 시민사회 풀뿌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시민사회 풀뿌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Civil Society Roots Incubator programme)은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격한 범주로서 런던시는 런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소속감을 높이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20개의 초기 단계(마이크로) 및 발전 단계(성장)의 커뮤니티 주도 파트너십을 선정하였고 이후 모든 상세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3) 런던 지역사회 대응 기금

런던 지역사회 대응 기금(London Community Response fund)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급히 지정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런던시는 런던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였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그 결과물만 공개된 상태이다.

4) 위험에 처한 문화 및 지역사회 공간 사업

위험에 처한 문화 및 지역사회 공간 사업(Culture and Community Spaces at Risk) 2016년부터 런던의 풀뿌리 문화와 세계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위험에 처한 문화 사무소(Culture at Risk Office)를 운영하였다.

이 사무소는 존속 위험에 처한 문화 및 창작 공간을 즉각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적인 비즈니스, 문화 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을 사례별로 직접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고 여기에는 예술 센터, 극장, 커뮤니티 센터, 음악 공연장, 박물관 및 루이삼에서 해링기, 하운슬로, 타워 햄릿에 이르기까지 런던 전역의 지역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기타 공간에 대한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5) 런던 지역사회 반응 조사

런던 지역사회 반응 조사(London Community Response Survey)를 런던시에서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일선 시민사회단체에 매주 발송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범런던의 대응을 알리기 위해 다른 다양한 정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주 설문에서는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런던시 당국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필 질문을 실시하였고 2주차 이후의 설문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수혜자 그룹에서 관찰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1주차 설문과 다시 연계하여 조직 유형에 따라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설문지는 시민단체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설문지이기도 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단체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광역 런던 지방정부가 이미 보유한 연락처를 사용하여 모집되었으며, 대규모 인프라 조직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조직에 초대장을 전달하도록 권장하는 이른바 '눈덩이 샘플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읽을 때 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런던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를 완전히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런던의 시민단체 활동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6) 런던 시민의 힘 지수

런던 시민의 힘 지수(London Civic Strength Index)는 런던 시민들과 함께 공동 설계하고 공동 제작한 것으로 청년 재단(The Young Foundation)이 개발하고 GLA가 자금을 지원했다. 이 지수는 런던 자치구와 조직이 지역사회의 강점에 대한 토론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지수로서 최고가 5점 최저가 1점으로 되어 각 자치구 별로 평가가 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지수를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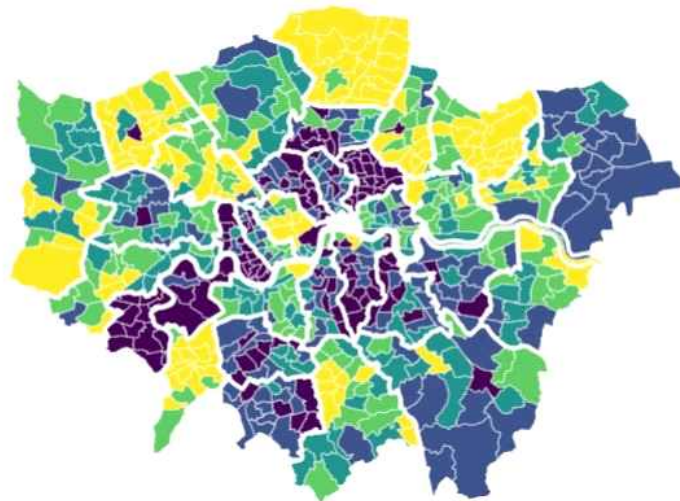
<그림 4-2. 런던 시민의 힘 지수 지표>

Civic Strength Index

Combined scores across all domains of civic strength.

With 1 being the bottom and 5 being the top quintile.

1.00  5.00



Created using Flourish Studio

출처: London Data Store. London Civic Strength Index. <https://www.youngfoundation.org/our-work/publications/london-civic-strength-index/> (최종검색일: 2023. 9. 2.)

이 지수를 보면 런던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시민단체 및 조직이 강하고 어떤 지역이 미흡한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런던시 정부는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7) 커뮤니티 혁신 및 성장

커뮤니티 혁신 및 성장(Community transformation and growth)이 일곱 번째 범주이다. 이는 런던 도심의 성장을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의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으로서 하부에 착한 성장 기금: 런던의 재생 지원(Good Growth Fund: supporting regeneration in London)과 크라우드펀딩 런던(Crowdfund London), 개발 지원 자금(Development Support Funding) 등이 있다.

이 중 개발지원 자금은 코로나 19 로 인한 긴급 지원 형식이어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착한 성장 기금은 7천만 파운드의 규모로 런던경제행동파트너십(LEAP)과 협력하여 이 기금은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재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목표로는 ① 런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지원, ② 런던의 여러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장소 기반 전략 제공, ③ 변화가와 도시 중심가에서 산업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 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런던을 모두를 위한 기회의 장소로 만드는 사업 지원 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8) 사회적 처방 사업(Social Prescribing)

사회적 처방 사업은 환자가 지역의 비 임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런던 시장의 건강 불평등 개선 전략의 공약이었다. 실제 영국에서 최소 20%의 사람들이 비의학적 이유로 일반의(GP)를 방문하고 있고 사회적 처방 사업은 의사 및 병원 방문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런던 시의 노력이기도 하다.

9) 번창하는 런던 사업(Thrive LDN)

번창하는 런던 사업은 정신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사업이자 운동이다.

이는 모든 런던 시민이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 차원의 공공 정신 건강 파트너십 사업으로서 런던에 거주하거나 런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파트너 쉽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런던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런던 시민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36개 단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10) 지역사회 스포츠 사업

지역사회 스포츠 사업(Community Sport)은 지역사회 스포츠에 투자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며, 런던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스포츠 단결(Sports Unites)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런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시는 스포츠와 신체 활동을 활용하여 런던의 5가지 주요 우선순위 분야를 해결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5가지 우선순위 분야는 아래와 같다. ① 가장 비활동적인 사람들이 더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사람들의 정신 건강 및 웰빙 개선, ③ 지역사회의 고립과 외로움 줄이기, ④ 지역 및 커뮤니티 간 연결성 강화 ⑤ 심각한 청소년 폭력의 감소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 단결 펀드를 통해 건강과 웰빙 개선을 위한 지역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는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다른 스포츠 및 비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5가지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 계획들을 확장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스포츠 부문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고, 이를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포츠 부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스포츠 단체에 교육을 제공하여 단체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단체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11) 팀 런던 사업

팀 런던 사업(Team London)은 자원 봉사, 교육, 자문 등 시민 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런던시가 원하는 시민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선단체나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팀 런던이 지원해주며 현재 2,500개 이상의 자선단체가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소규모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2) 문화 장소 및 인프라 보호 사업

문화 장소 및 인프라 보호 사업(protecting cultural venues and infrastructure)은 런던시가 시내의 문화적 장소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오래되어 노후한 시설이나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문화 인프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이상이 대표적인 12가지 사업 범주이다. 커다란 12개 범주에 따라 런던의 시민단체, 시민사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보수당 정권아래에서 실시되었던 시민단체 개혁의 결과물이다. 런던시는 이에 더하여 지원성과에 따른 모범적인 사례 3개를 공개하고 있다.

그 3가지 사례는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¹⁵⁾, 청년시민 기금¹⁶⁾, 문화씨앗 기금이 그것이다. 각각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현황은 현재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접근 가능한 런던시의 시민단체 관련 지원과 정책에 대한 데이터이다. 시의 시민단체 관련 홈페이지에 데이터 부문을 만들어 완전히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개 데이터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런던 데이터 상점(London Data Store)은 누구나 런던과 관련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무료 개방형 데이터 공유 포털이다. 시민, 자선 단체, 비즈니스 소유자, 연구원, 개발자 등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700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이한 부문이 바로 난민 및 이민자 데이터 프로젝트(Refugee and Migrant Data Project)이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난민 및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데이터 사용처를 개발하고, 5개 단체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런던의 모든 난민 및 이주민 단체에 개방된 여러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러한 데이터의 완벽한 공개로 얻는 투명성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2차 활용을 통한 공공성의 확보는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투명성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 부문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부문으로는 런던시 당국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보조금과 곧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을 상시 확인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금 지원은 3차 사업으로서 런던 시장은 시티 브릿지 트러스트(CBT) 및 내셔널 복권 커뮤니티 펀드(NLCF)와 협력하여 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1, 2차 자금지원 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부문별 또는 부문 간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역량 강화, 연구 또는 교육에 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지식 주도 그룹의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자금 지원을 어떠한 시민단체에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은 구조적 불평

15) Mayor of London. "Civil Society Roots Grant prospectus: Round Two."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civil-society-roots-grant-prospectus-round-two#about-civil-society-roots-funding-173963-title>). (최종검색일: 2023. 9. 3.)

16) Mayor of London. "Young Londoners Fund."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education-and-youth/young-londoners/young-londoners-fund>). (최종검색일: 2023.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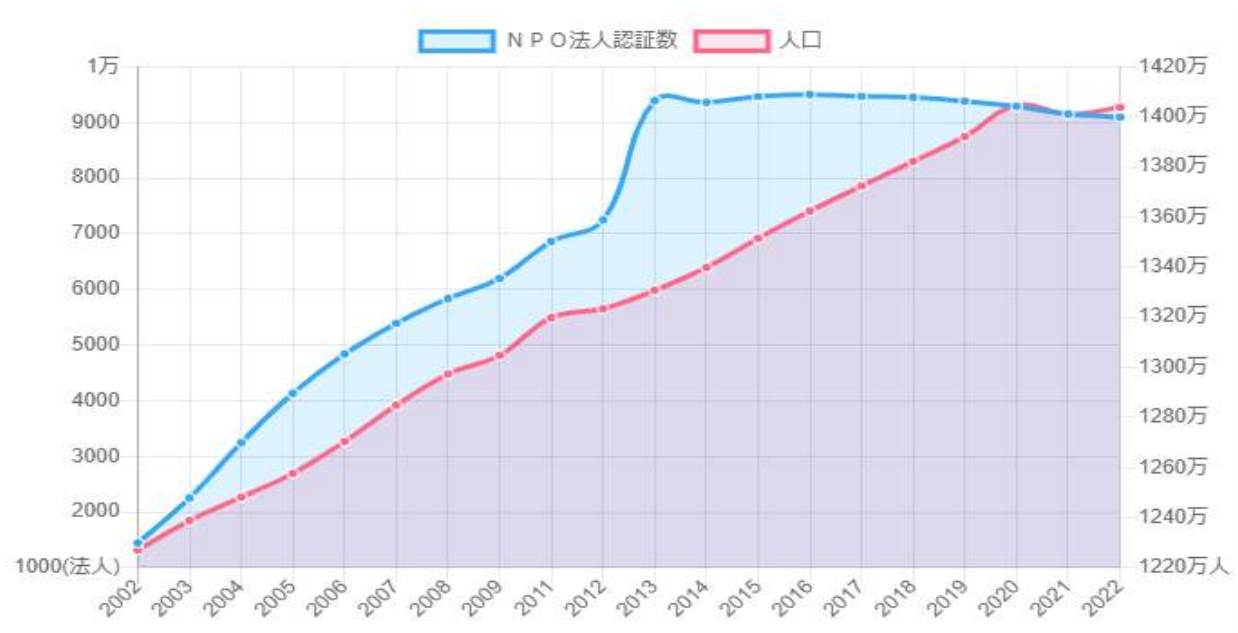
등의 영향을 받는 단체가 주도하고 그러한 단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인 런던의 10개 자치구 중 한 곳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단체의 연매출이 50만 파운드 (약 8억원) 이하임을 명시하여 거대 단체 지원이 아님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 이상이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의 개괄적인 설명이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인 도쿄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관련 정책 현황을 역시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나. 도쿄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 시행했고, 2011년 4월부터 제7차에 걸쳐 NPO인증제도의 간소화나 인정NPO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조치의 강화 등 NPO법을 개정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NPO는 1999년 1,724개 단체에서 2014년까지 50,086개 단체로 급격히 증가, 2022년 현재는 50,187개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¹⁷⁾ NPO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연간 5만 개의 NPO 법인에서 약 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전체 NPO법인의 임직원 수도 크게 증가하여 임원들의 수는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급 직원은 약 15만 6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¹⁸⁾

도쿄도에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9,157개 NPO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도쿄도 NPO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 도쿄도 NPO 수의 추이(2002-2022)〉



출처: 도쿄도 그래프로 보는 도쿄도의 NPO법인 인증 수(<https://graphtochart.com/japan/tokyo-non-profit-organization.php#pulationcharttable>). 최종검색일: 2023.09.07.

17) 수치는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seni> (최종검색일: 2023. 8. 13.)

18) 内閣府, 2021, 「令和2年度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に関する実態調査 報告書」, p.30.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시민활동으로 일컬어지는 NPO의 활동 분야는 NPO법 제2조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규정에 따른다.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20가지로 정의되어있다.

-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 ② 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③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④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⑤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⑥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⑦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 ⑧ 재해 구호 활동
- ⑨ 지역 안전 활동
- ⑩ 인권 옹호 또는 평화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⑪ 국제 협력 활동
- ⑫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 ⑬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 ⑭ 정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 ⑮ 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⑯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 ⑰ 직업능력 개발 또는 고용기회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⑱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 ⑲ 각 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 ⑳ 각 호에 열거하는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활동

2010년의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NPO의 주요 활동 분야는 1위가 보건 · 의료 및 사회복지, 2위 사회 교육, 3위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 4위 아동의 건전 육성, 5위 환경, 6위 국제협력 분야였다(복수답변).¹⁹⁾ 2020년 내각부 조사에서 일본 전체 NPO의 주요 활동 분야는 1위 보건 · 의료 및 사회복지, 2위 아동의 건전 육성, 3위 사회 교육, 4위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 5위 학술 · 문화 · 예술 · 스포츠, 6위 환경 분야(복수답변)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19) 東京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センター, 2011. p.14.

20) 内閣府, 2021. p.6.

10년간 NPO의 활동에 있어서 변함없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증진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 가운데 아동의 건전 육성과 도시 조성·마을 만들기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의료 및 돌봄 노동력의 부족, 지방의 쇠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한 정부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 행정력만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시민사회의 도움과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도쿄도의 실질적인 시민단체, 관련 단체에 대한 정책 현황은 도쿄도의 관련 홈페이지 지역활동·다문화 공생 부문 아래의 시민활동 부문에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²¹⁾ 주요 담당부서는 도쿄도 생활 문화 스포츠국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서 시민활동 지원 상황, 시민단체와의 협업 상황, 시민활동 관련 조사 내용의 공개 등이 그것이다.

먼저 시민사회의 촉진 부문에서는 최근 복지, 환경,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나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시민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성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도쿄도 정부가 가지고 '도쿄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및 시민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쿄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운영 등에 관한 상담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해 시에는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광역 거점이 되기도 한다. 활동 내용은 정보-상담, 조사-연구, 연수-훈련, 네트워크 구축, 보급-계몽 등 다양하다. 도쿄도에서는 시민 활동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자발적-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도쿄도내 구시정촌의 NPO 지원·협업에 관한 시책의 실시 현황이다. 2015-2021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2021년 자료의 PDF 파일의 모습이 아래 그림이다.

21) 도쿄도 생활 문화 스포츠국 홈페이지 시민사회부분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chiiki_tabunka/chiiki_katsudo/shimin/0000000041.html). 최종검색일: 2023.09.03.

<그림 4-4. 도쿄도내 구시정촌의 NPO 지원·협업에 관한 시책의 실시 현황>

東京都内区市町村におけるNPO等支援・協働に関する施策の実施状況
(令和3年度版)

※この一覧表は、東京都が実施した「都内区市町村におけるNPO支援・協働に関する施策状況調査」のデータを元に作成したものです。

【注】一覧表中において、○=実施あり を表している

| 区市町村名 | 担当部署名 | 情報提供 | | | 制度 | | | 税率制度 | | 協働事業評価制度 | 財政支援 (基金等) | | 継続的に使用する活動場所の提供 | 多様な協働事業 |
|-------|------------------------------------|--------|---------|---------------|---------------|------------|----------|---------------|-------------------|----------|-------------------|----------------|-----------------|---------|
| | | ①HPの設置 | ②情報誌の発行 | ③その他の媒体での情報提供 | ④条例・指針・計画等の策定 | ⑤支援センターの設置 | ⑥相談窓口の設置 | ⑦協働の理解・普及啓発制度 | 団体から行政への協働等事業推進制度 | | 行政から団体への協働等事業推進制度 | 財政的支援(補助金・助成金) | | |
| 千代田区 | 地域振興部コミュニティ総務課コミュニティ係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中央区 | 区民部地域振興課コミュニティ支援係 | ○ | ○ | ○ | ○ | ○ | ○ | ○ | ○ | ○ | ○ | ○ | ○ | |
| 港区 | 産業・地域振興支援部 地域振興課 区民協働・町会自治会支援担当 | ○ | ○ | | ○ | ○ | ○ | | | | ○ | ○ | ○ | ○ |
| 新宿区 | 地域振興部地域コミュニティ課管理係 | ○ | ○ | ○ | ○ | ○ | ○ | ○ | ○ | ○ | ○ | ○ | | |
| 文京区 | 区民課地域振興・協働推進係 | ○ | | ○ | ○ | ○ | ○ | ○ | ○ | | | ○ | ○ | |
| 台東区 | 区民部区民課協働・コミュニティ係 | ○ | ○ | | ○ | ○ | ○ | ○ | ○ | ○ | | | | |
| 墨田区 | 地域力支援部地域活動推進課まなび担当 | ○ | ○ | | ○ | | ○ | | | | ○ | ○ | | |
| 江東区 | 地域振興部地域振興課区民協働推進担当 | ○ | | ○ | ○ | △ | | ○ | ○ | ○ | | | | |
| 品川区 | 地域振興部 地域活動課 協働推進係 | ○ | ○ | | ○ | ○ | ○ | | | | ○ | ○ | ○ | ○ |
| 目黒区 | 企画経営部企画経営課企画係 | ○ | ○ | | ○ | ○ | ○ | ○ | ○ | ○ | | | | |
| 大田区 | 地域力推進部地域力推進課区民協働・生涯学習担当 | ○ | ○ | | ○ | ○ | ○ | ○ | ○ | ○ | ○ | ○ | ○ | |
| 世田谷区 | 生活文化政策部市民活動推進課まちづくり推進係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도쿄도 생활 문화 스포츠국 홈페이지 시민사회부분(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chiiki_tabunka/chiiki_katsudo/shimin/0000000041.html).
최종검색일: 2023.09.03.

<그림 4-4>에서 나타난 PDF 자료를 보면 도쿄도가 시민단체들을 14개 부문의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4개 부문은 크게 정보제공, 제도, 제안제도, 협동사업 평가제도의 유무, 재정지원,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활동장소(사무실 등)의 유무, 다양한 협력사업의 유무 로 나뉘어져 있고 정보제공 부문에는 시민단체 홈페이지의 유무, 정보 잡지의 발행여부, 그 외의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발신(SNS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제도부문에는 시민 단체의 조례, 지침, 계획 등의 유무, 지원 센터 설치 유무, 상담 창구 개설 유무, 타 단체와의 협력 활동의 이해, 보급을 위한 계발 활동 유무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제안제도 부문에는 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이 가능한지, 역으로 지방정부에서 단체에 모집 등의 여부가 있으며 재정지원은 사적인 지원(기금), 공적인 지원(지원금, 보조금) 여부가 포함된다. 이어서 도쿄도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도쿄도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는 도쿄 시내의 구시

정촌의 자원봉사센터와 광역의 자원봉사·시민활동 추진단체, 행정, 기업·노동조합, 교육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추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시정촌의 자원봉사센터 등의 인터넷 링크, 민간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두 번째로는 도쿄 재해 자원봉사 네트워크로 도쿄 재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는 재해 시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평소에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단체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연락 조직이다.

정리하자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지방정부의 NPO 지원 정책은 2001년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행·재정 개혁 하에 ‘행정과의 협동’을 내걸고 위탁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자조와 자립을 원칙으로 NPO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0년 6월에,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가 정리한 ‘새로운 공공’ 선언에서는 ‘관’ 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NPO, 기업 등 민간영역이 공적인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관여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NPO는 이전보다 더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높여온 것이다.²²⁾

이 ‘새로운 공공’의 주체가 된 NPO 활동에 있어서의 과제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재정적 자원과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²³⁾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 2013년 5월 제13차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된 ‘공조사회 조성 추진을 위하여(共助社会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공조사회 조성의 중요성을 경제재생·성장전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일본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조·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자연조직, NPO, 기업이나 주민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공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지원함으로써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⁴⁾

NPO의 재정적 자원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조사회조성간담회’에 ‘자금면의 과제에 관한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 워킹그룹은 NPO의 자금 면에서의 지원책으로 ‘시민펀드’를 중시했다.²⁵⁾ 일반적으로 NPO의 수익원은 기부금, 회비, 조성금·보조금, 수탁사업 수입, 사업 수입이다. 이 가운데 조성금은 민간재단에서 NPO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며,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제공되는 자금이다. 이것들은 건당 금액은 크고 조달하기 쉽지만, 용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낮다. 수탁사업 수입은

22) 内閣府, 2010, 「第8回 「新しい公共」 円卓会議資料」, pp.4-6.

23) 内閣府, 2012, 「平成 24 年度地域における「新しい公共」の担い手による取組事例に関する調査報告書」, pp.220-221.

24) 共助社会づくり懇談会, 2013, 「共助社会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論点の整理と今後の議論の進め方について」, p.1.

25) 資金面の課題に関するWG, 2013, 「資金面の課題の解決に向けて」.

기업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다. 조사 · 연구나 업무위탁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건당 금액은 크지만 사업 관련 경비가 되므로 용도는 제한된다. 사업 수입은 주로 지속적인 사업 전개에 의해 생기는 수입이다. 사업 수입으로 이익이 나오면, 본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가 높은 자금이다. ‘시민펀드’의 구상은 NPO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공조의 주체인 시민 주체들의 재원으로 대체한다는 의도의 명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워킹그룹은 ‘시민펀드’를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모아 시민 활동에 조성을 실시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시민들에게 지역의 과제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NPO 등에 시민을 중개하는 ‘시민펀드’는 특히 설립 초기의 NPO나 소규모 NPO에 대한 지원으로서 큰 기대가 모아졌다.²⁶⁾ ‘시민펀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가능해진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사회에 일기 시작한 기부문화이다. 일본 사회에서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은 ‘자원봉사활동 원년’으로 일컬어지듯이 2011년은 ‘기부 원년’으로 불린다.

마쓰이 마리코(松井真理子)등의 학자는 ‘시민펀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시민펀드는 첫째, 기업과 NPO, 또는 NPO와 지연단체 등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조성 과정에서 NPO 간의 상호 평가를 거침으로써 각각의 NPO의 기획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나아가 정보 공개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이며, NPO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의의도 있다. 셋째, 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시민이나 기업이 지역 사회나 주위의 다양한 과제에 당사자성을 양성하는 기회이다. 넷째, 기금에 기부 시 조성 단체나 활동 테마, 활동 영역을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사회 과제의 명확화를 가져온다. 다섯째, 이와 같은 구조는 NPO가 가지는 선진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새로운 선진성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²⁷⁾

26) 資金面の課題に関するWG(2013), p.7.

27) 松井真理子 · 金憲裕, 2013, 「市民ファンドを通じた市民セクタの再構築とコミュニティエンパワーメント」, 『四日市大学総合政策学部論集』 第12号.

도쿄도는 이러한 NPO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에서는 도쿄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Tokyo Voluntary Action Center: TVAC)와 협력해, 자원봉사나 NPO등의 시민 활동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NPO 관련 예산은 생활문화스포츠국의 도민생활비 과목의 시민활동 촉진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조사회 조성 추진 사업, 자원봉사 문화의 정착, 운영 보조, 결혼을 위한 기운 조성, 법인 인증 사무, 공익법인 사무, 종교법인 인증 사무, NPO법에 따른 법인 인증 등의 항목에 2022년에는 총 704,874,000엔이, 2023년에는 826,390,000엔이 계상되었다.²⁸⁾

TVAC는 1981년에 도쿄 자원봉사센터로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시민활동에 관한 상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정보지 「네트워크」의 발행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한 정보 사업, 자원봉사·시민활동 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연수 사업, 다양한 과제에 임하는 자원봉사·시민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자원봉사·시민활동의 교류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에 대해 자금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꿈 응원 펀드(ゆめ応援ファンド)」 사업이나 민간 조성단체와의 제휴와 연구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 「종합적인 학습 시간」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학의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 청년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프로그램, 기업이나 노동조합과의 협동에 의한 기업 자원봉사 활동 추진 프로그램,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봉사 활동의 추진 프로그램, 재해 자원봉사의 추진을 목표로 도쿄 재해 자원봉사 네트워크와의 제휴를 통한 재해 봉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와의 과제별 협동 사업으로서 식사 서비스, 이송 서비스, 노인돌봄 시설·노인돌봄 서비스·그룹 홈에 관한 연구 협의회 등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TVAC의 운영은 자원봉사·시민활동이나 NPO의 대표자,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시민활동 센터 직원, 민간 조성 단체, 행정,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TVAC운영위원회에 의해 시대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부금, 조성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NPO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 활동이 도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TVAC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NPO, 행정, 기업이나 노동조합, 교육 기관, 연구자 등과 제휴하고 있다.²⁹⁾

28) 生活文化スポーツ局, 2023, 「令和5年度 予算案概要」, p.4.

이 중에서도 특히 도쿄 지방 정부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꿈 응원 펀드’이다. 이 ‘꿈 응원 펀드’에 대해서는 뒤의 우수 해외 사례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에 더하여 도쿄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협업의 촉진 분야이다. 홈페이지에 “도쿄도는 사회공헌활동 단체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최근 많은 도민이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사회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지난 2000년 12월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시행되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이 활동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가운데, 도쿄도에서도 복지, 환경,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를 비롯한 사회 공헌 활동 단체와 협력하여 그 선구성, 유연성, 민첩성 등의 특성을 살려 보다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도쿄도에서는 시립공원과 법인과의 협정에 따른 도립공원 화단 관리, 시립공원과 법인에 위탁한 에이즈 전화 상담 등 협업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업 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협동 추진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협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협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섯 가지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의 6 가지가 그것이다.

- ① 협업에 적합한 사업 검토 및 기존 사업 재검토에 있어서의 협업
- ②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업 형태 선택
- ③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협업 파트너의 선정
- ④ 협업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피드백
- ⑤ 정보 공개 및 협업 추진체계 정비
- ⑥ 협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증진

29) 도쿄 자원봉사 시민활동 센터(<https://www.tvac.or.jp/tvac/welcome.html>). 최종검색일: 2023.08.15.

추가로 이러한 협업 사업을 위한 매뉴얼과 성공적인 협업 사업 사례집, 참가 사업 일람 등도 공개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협업 관련 사업의 담당 부처를 설명해 놓은 도쿄도의 자료이다.

<그림 4-5. 도쿄도 협업의 추진방침 개요>

協働事業の検討

指針 1
協働にふさわしい事業の検討や既存事業の見直しにおける協働

事業実施局

- ・新たな協働事業の検討や、既存事業の協働化に向けての検討において、協働の手法を取り入れます。

生活文化局

- ・社会貢献活動団体に関する情報の収集・提供を行います。

協働事業の実施

指針 2
効率的で効果的な協働形態の選択

事業実施局

- ・効率的で効果的な協働となるよう、適切な協働の形態を選択します。

生活文化局

- ・協働マニュアルを作成するとともに、協働の新しい形態や他の自治体での協働の事例などの情報を提供します。

指針 3
事業に最も適した協働相手の選定

事業実施局

- ・社会貢献活動団体の活動内容・実績、事業遂行能力、財政状況等を検討し、事業目的に最も適する協働相手を選定します。

生活文化局

- ・適切な協働相手が選定できるよう、社会貢献活動団体に関する情報の収集・提供を進めます。

協働事業の評価

指針 4
協働事業実施後の評価とフィードバック

事業実施局

- ・協働事業実施後、社会貢献活動団体の特性を活かしたかなどの評価を行い、意見交換をします。

- ・評価結果のフィードバックを行います。

生活文化局

- ・事業実施局が評価しやすいよう、協働事業評価チェックシートを作成します。

協働を進めるための体制・環境づくり

指針 5
情報の公開と協働推進体制の整備

事業実施局

- ・各局は、総合窓口と連携・協力しながら、協働事業を推進していきます。

生活文化局

- ・協働事業や社会貢献活動団体の情報の一元化、情報公開、各局との調整のため、総合窓口を設置します。

指針 6
協働に関する職員の理解促進

事業実施局

- ・各局は、総合窓口と連携して、社会貢献活動団体や協働に関する職員の理解を深めます。

生活文化局

- ・職員の理解を深めるため、公開講座の実施や職員のボランティア活動の推進などを行います。

출처: 도쿄도 「社会貢献活動団体との協働マニュアル」, 2002.03.09.

<그림 4-5>는 도쿄도 협업의 추진방침의 개요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6개의 지침에 따라 어떤 부처에 연락을 취하고 협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사업실시국, 생활문화국 두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이 협업사업의 검토, 실시, 평가, 추진을 위한 체제와 환경 만들기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담당 조직 및 제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은 한국과 역시 유사한 문화와 정치체계를 지니고 있어 관료 주도의 양식을 띠고 있으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관 협동을 위한 행정과 민간과의 협업 시도는 그 성공과 실패 사례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은 현재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이 런던과 도쿄의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이다. 자세한 비교와 분석은 뒤의 4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런던의 경우는 외곽적인 지원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형태이며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그 활동이 지속성, 전문성, 투명성을 가지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회 환경과 정치 문화에 더하여 장기불황으로 점차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일본에서 시민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NPO의 자조와 자립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NPO의 조직과 운영은 당연히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충분한 인력 공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인구감소와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일본에서 세수 부족과 정부 예산 축소, 복지 혜택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이다. 이에 도쿄도는 NPO 유지를 위해 대안으로 ‘시민펀드’와 같은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기부를 통해 단체를 운영한다는 이상적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 실현의 어려움은 도쿄도의 상황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자립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지속시키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서울시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이나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같은 매우 이례적인 대형 재난이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대규모로 확산시켰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다.

2. 담당 조직 및 제도

가. 런던

런던시에서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부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부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영국의 지방 자치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관할 구역 안의 주민과 사업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주민복지, 교육, 주거, 도시계획, 폐기물(쓰레기) 관리부터 인허가, 기업지원, 등록업무, 방충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담당한다. 잉글랜드의 모든 영역은 최소 한 개의 지역사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이 관장한다. 2010-2011년에 설립된 이들 지역사업파트너십은 자발적으로 설립된 기관들로 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치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와 관련해 지방정부(그 외 기타연합기관, any combined authority)와 긴밀히 협력한다. 대부분 기관의 경우 지방정부의 위원들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에 소속된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서비스는 필수서비스(need service),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 편의서비스(amenity service), 시설서비스(facility service)의 4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수서비스(need service)에는 교육, 개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주택이익 등이,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에는 경찰, 지역안전, 소방/구급, 긴급 계획 등이, 편의서비스(amenity service)에는 도로, 거리청소, 계획, 주차장, 환경보건, 쓰레기 처리, 소비자 보호, 경제발전 등이, 시설서비스(facility service)에는 주택, 도서관, 박물관, 예술 갤러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쓰레기 수집 등이 있다. 즉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처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이다.

그중에서 런던은 다른 지자체와 또 다르다. 광역런던시(GLA)는 런던 전역에 걸친 사무의 기획 조정과 전략 수립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하지 않으며, 조례 제정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민에 대한 교육, 청소 등의 실제행정서비스는 런던의 기초자치단체인 32개 런던버로우(London boroughs)와 City of London Corporation이 실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런던 전역에 관한 기획, 조정 및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경전철, 주요 도로 계획 등), ② 지역 계획 및 주택정책, ③ 경제개발과 도시계획, ④ 환경보건(런던구와 협력하여 공해와 폐기물대책), ⑤ 경찰, ⑥ 소방 및 비상계획, ⑦ 문화, 관광, 미디어 및 스포츠, ⑧ 보건위생 등이 그것이다. 즉 런던의 보건, 교육, 사회복지, 예술 및 문화, 환경보호 서비스는 모두 광역런던시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는 시민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명시

된 과, 부처 등의 형태가 아닌 사안별 협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잉글랜드 중앙정부와 런던시 정부의 형태이며 기초자치단체인 32개 런던버로우의 관계이다. 이에 단순히 한국식의 부처 형태로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시민정책(Civil Society)라는 주제 각각의 사안별로 다층적 거버넌스, 다층적 협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광역런던시는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으면서 다른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역할이 다르며,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아닌 지역 정부로 취급된다. 광역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는 런던 시장과 25명의 의원이 이끄는 런던 의회로 구성된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정치 자문가’ 로 구성된 지원팀을 두며, 10명을 임명할수 있다. 역대 시장들은 이러한 임명을 ‘부시장’ 또는 ‘시장 내각’ 이라 표현했다. 공식적으로, 법적 ‘부시장’ 은 오직 한 명으로, 런던의회의 의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런던시개발공사(Mayoral Development Corporations)의 사장들을 임명한다(장은혜, 2015: 71). 광역런던시(GLA) 관내에 있는 City of London Corporation(또는 줄여서 City of London)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City of London은 런던의 기원이 되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32개 런던지역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경찰(City of London Police), 형사법원(Central Criminal Court), 템즈강에 가설된 5개의 항만검역국(Port Health Authority), 3개의 푸드마켓(Billingsgate `Spitalfields ` Smithfield) 등 지역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³⁰⁾

이러한 영국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파악하여야만 시민단체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성이 낮아 더 세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으나 중요한 것은 중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의 지방자치 정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30) 장은혜, 2015: 73.

나. 도쿄

도쿄는 런던에 비해 서울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쿄도의 하부조직인 생활문화스포츠국에서 전체 사업을 담당한다. 생활문화스포츠 국은 지역활동·다문화공생, 남녀평등, 법인의 인증, 여권업무, 도쿄 도민의 안전, 소비생활, 사립학교 관리, 문화진흥, 스포츠 촉진 등의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중에 지역활동·다문화공생 부문에서 시민단체의 관리와 지원을 맡고 있다. 지역활동·다문화공생추진 부문 안에서도 시민단체 지원은 도시생활부 지역활동진흥과(都民生活部 地域活動推進課)의 담당이다. 생활문화스포츠국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모든 사업개요, 예산, 보조금, 지원금 등의 지출상황, 주요한 추진계획, 주요사업의 진행상황, 심의회 보고, 공문서 공개현황, 교통비, 해외출장비 등의 집행현황, 공무원들의 직무행태 개선 현황 등을 자세하고 투명하게 PDF 형태로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있어서 간략하게 3-4 페이지로 축약한 개요와 전체 자료를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도쿄 도민들이 방대한 양의 전체 자료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요점만 축약하여 살펴 볼 수 있게 한 것은 장점이다. 다음의 그림은 도쿄도의 포털 사이트이다.

<그림 4-6.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生活文化スポーツ局 情報公開ポータル

更新日：令和4年（2022）5月27日

生活文化スポーツ局 情報公開ポータル

- ▶ 事業概要
- ▶ 予算
- ▶ 補助金等の支出状況
- ▶ 主な計画等
- ▶ 主要事業の進行状況
- ▶ 審議会等
- ▶ 局へ寄せられた都民の声
- ▶ 公文書の開示状況
- ▶ 交際費・海外出張費の執行状況
- ▶ 自律改革

출처: 도쿄도 생활 문화 스포츠국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info/jouhou/>). 최종검색일: 2023.08.20.

결론적으로 도쿄의 경우는 서울시와 유사한 형태의 국, 부, 과 형태를 띤 담당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의 공개성과 양, 질 모든 부문에서 서울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방되어 있으며 접근성도 높고 매우 상세한 정보를 공개중이다. 런던과 도쿄 모두 지방자치의 특성상 서로 전혀 다른 형태의 담당 조직 및 제도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두 지방정부 모두 정보의 공개정도, 공개량, 부처의 업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설명 모두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 배울만한 점이다. 이는 현재 개인 정보 보호법 등으로 제한되어 정보의 공개 수준이 매우 낮은 서울시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률적 제한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추후의 과제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두 해외 지방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와 집행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지원 예산 규모와 집행 관리 방안

먼저 대전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런던과 도쿄 두 지방 정부 모두 시민단체 관리와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와 집행 관리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투명하게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시민단체 관리와 지원도 이러한 대전제 아래에서 모든 지원, 관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가. 런던

먼저 런던시의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예산과 관리 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지원 자체의 방식을 설명하면 런던시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자선단체를 지원하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문화 씨앗 기금(Culture Seeds Fund): 런던의 모든 자치구에서 공동체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발을 통해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 사이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② 시민사회 뿌리 기금(Civil Society Roots Fund): 흑인 및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 시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고령 인구 지원 단체를 지원한다.(연간 최대 30,000파운드)
- ③ 런던 크라우드펀드(Crowdfund London): 런던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후원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00파운드)
- ④ 청년시민 기금(Young Londoners Fund):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며 4,5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민단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런던시는 자원봉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역 자선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희망자는 관심 분야, 동기, 희망 장소 등을 입력하여 자선단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자선활동 경력을 등록할 수 있다. 자선단체 또한 개별 계정을 등록하고 기관 소개, 모집 공고 등을 입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쌍방향 웹사이트이다.

<그림 4-7. 런던시 자원봉사 웹사이트>



We run a number of Team London volunteering programmes and offer hundreds of roles from many different organisations.



Volunteer in London

We offer hundreds of high-quality volunteering roles from a wide range of approved organisations. With both one-off and ongoing roles,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Food bank volunteering

Volunteer your time to help food banks to support Londoners most in need this winter.



Become a Major Event volunteer

Become a Major Events volunteer and support London as a world class venue for large scale events.



Employer Supported Volunteering

Employer supported volunteering is good for your business and your staff.



Coronavirus (COVID-19): volunteering

Find information on volunteering safely in your community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출처: 런던시 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volunteering/get-involved>).

최종검색일: 2023.09.24.

또한 런던의 자선단체는 런던시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런던시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런던시는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선단체가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자선단체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대회(Data Expedition)를 개최하고 자선단체, 정책 입안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유용한 데이터 검색, 데이터 분석과 요약, 현안 적용 등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런던시의 자선단체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2. 런던시 자선단체 현황〉

| 단체명 | 인원 |
|----------------|------|
| 사회복지자선단체 | 3596 |
| • 빈곤자선단체 | 3375 |
| • 상담·지원자선단체 | 221 |
| 종교자선단체 | 4694 |
| • 기독교자선단체 | 3343 |
| • 유대교자선단체 | 878 |
| • 이슬람자선단체 | 473 |
| 문화유산자선단체 | 2368 |
| • 예술자선단체 | 1955 |
| • 역사·종교건물자선단체 | 413 |
| • 지역사회자선단체 | 3269 |
| 교육·훈련자선단체 | 824 |
| • 특수교육자선단체 | 510 |
| • 평생교육자선단체 | 314 |
| 의료연구자선단체 | 438 |
| • 불치병관련자선단체 | 438 |
| 노인자선단체 | 326 |
| • 노인간호·복지자선단체 | 326 |
| 스포츠·레크리에이션자선단체 | 281 |
| • 스카우트·안내자선단체 | 281 |
| 어린이·청소년자선단체 | 256 |
| 가족자선단체 | 464 |
| • 사회복지자선단체 | 249 |
| • 재정지원자선단체 | 215 |
| 국제자선단체 | 203 |
| 환경자선단체 | 201 |
| • 기후변화자선단체 | 201 |

출처: Charity Choice. “The Premier Guide to Charities in the UK” (<https://www.charitychoice.co.uk/charities/london>). 최종검색일: 2023.09.03.

런던시의 자선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자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 기관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데 런던시에서 관여하는 기금으로 시티 브리지 트러스트(City Bridge Trust), 시티펀드(The City Fund), 시티캐시(City's Cash) 등이 있다.³¹⁾ 런던시에서 관리하는 시티펀드 및 시티캐시는 자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각각의 신탁기관을 살펴보면 런던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지원 기관인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는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Bridge House Estates)에서 설립한 자선 목적의 신탁기관으로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는 1097년 윌리엄 2세가 런던의 교량을 수리하기 위해 특별세를 모금하여 기금을 관리한 데에서 유래하며 1282년 왕실 헌장을 통해 법적인 지위와 관리 기구를 확보하고 있다.

런던시 지역공사(City of London Corporation)는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의 유일한 수탁기관이다.³²⁾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는 원래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지출해 왔으나 1995년 시티 브리지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런던 시민의 공공 이익을 위한 자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티 브리지 트러스트는 런던시 최대의 보조금 공여 단체이며 연간 약 3,0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³⁾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의 연간 수입은 2022년 기준 3,410만 파운드(약 580억 원)이며, 지출은 6,660만 파운드(약 1,140억 원)로 집계되고 있다.³⁴⁾ 수입은 투자수익 3,040만 파운드, 자선활동 수익 310만 파운드, 정부보조금 20만 파운드, 기타 소득 40만 파운드 등으로 이뤄져 있고 지출은 자선활동 4,900만 파운드, 기금조성비(raising fund) 1,530만 파운드, 기타 지출 200만 파운드 등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시티펀드 및 시티캐시가 있는데 시티펀드는 런던시 지역 공사, 경찰청 및 보건청의 활동비용으로 활용되고 임대료 및 이자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 요금 수입의 일부, 지방 의회 세금 등을 수익금으로 하며 지역 공사는 규정에 따라 런던시에서 징수한 사업 요금의 일부만 보유하며, 나머지는 중앙 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 재분배된다. 시티캐시는 런던시 지역공사가 관리하는 자선기금으로 주로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공간 관리 및 보전, 런던시장 활동 지원, 런던 도매시장(Smithfield & Billingsgate) 운영, 길드홀 음악연극학교(Guildhall School of Music & Drama) 운영 등을 위해 지출된다.

31) City of London. "City of London funds."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budgets-spending/city-of-london-funds>). 최종검색일: 2023.09.01.

32) City of London. "The City Bridge Trust."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working-with-community/trusts-and-charities>). 최종검색일: 2023.09.01.

33) City Bridge Trust. "City Bridge Trust grants reopen." (<https://www.citybridgetrust.org.uk/news-and-blog/city-bridge-trust-grants-reopen>). 최종검색일: 2023.09.01.

34) Charity Commission. "Bridge House Estat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charity-search/-/charity-details/1035628>). 최종검색일: 2023.09.01.

이러한 기금 이외에 런던시의 법령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런던의 경우는 ‘MD3119 지역사회 참여 및 시민 사회 2023-25 프로그램’³⁵⁾이라는 예산에 관련된 시장지침이 공개되어 있다. 먼저 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결정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2023-25년 GLA의 지역사회 참여 및 시민 사회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구하는 결정으로서 특히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과 관련하여 GLA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시민 사회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모든 런던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령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MD2848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회복에 참여하는 런던 시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강력한 지역사회 만들기' 미션 작업의 일환으로 MD2854, MD2905 및 MD2966에 따라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① 2023-24 회계 연도(지출 £ 406,000)와 2024-25 회계 연도(지출 £ 406,000) 사이에 런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 812,000의 총 지출, GLA의 참여 관행 개선 및 정책 결정 작업 흐름에 지역사회 연결사업 포함, ② 2023-24 회계연도 사이에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30,000파운드의 총 지출, 시민사회 기반 기금 2라운드 전달, 시민력 지수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실행을 포함, ③ 2023-24년 런던 시티 브릿지 트러스트로부터 £ 100,000 수령 및 2024-25년 동일한 금액의 지출, ④ 시민사회 뿌리 2 라운드에 최대 80,000파운드의 보조금 지원금 수여(MD2905 및 MD2854에 따라 승인된 75만 파운드 보조금에 추가), ⑤ 기존 기간제 시민사회 정책 및 프로젝트 책임자 직책의 연장을 지원하여 이 직책이 보조금 관리 및 수혜자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20,000파운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예산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인 1장: 기밀로 취급되지 않는 사실부터 주요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⁶⁾

35) MD는 Mayor's Decision (시장 결정)의 약어

36) 이어지는 모든 법령의 출처는 “MD3119 Community Engagement and Civil Society 2023-25 Programme” (<https://www.london.gov.uk/md3119-community-engagement-and-civil-society-2023-25-programme>) 을 번역한 것임.

- 1.1 GLA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에 기반 한다. 따라서 주요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개인이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1.2 GLA 지역사회 참여 관리팀의 임무는 런던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시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GLA의 여러 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참여 관행을 개선하고, 런던의 지역사회와 공동 설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입을 제공하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문(및 의사 결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시스템), 시민 사회 조직 및 커뮤니티 그룹의 역량과 힘을 강화하여 모든 런던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도시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3 GLA는 런던 도시 전체의 전략적 기관이므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는 파트너 기관의 힘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 프로그램은 주요 파트너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원과 지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업은 GLA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의 통찰력과 참여를 강화할 것입니다.
- 1.4 이 작업은 GLA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런던 시민, 특히 가장 소외되고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더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런던 시민이 GLA를 보고, 듣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하며, GLA 팀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달에 런던 시민, 특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요구, 삶, 우려를 반영하여 런던 시민을 사업에 더 잘 참여시켜야 합니다.

1.5 런던 지역사회의 주요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런던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GLA의 프로그램 개발 및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된 메커니즘 덕분에 런던의 지역사회는 더 나은 GLA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 런던의 지역 사회는 런던 시민들이 GLA의 의사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정 자원, 역량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 더 나은 자원을 확보하였음.
- 런던의 지역 사회와 GLA 간의 더 강한 관계와 더 높은 신뢰
- GLA 및 기타 런던에 기반을 둔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의 시민 및 지역사회 주도 데이터와 인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인식 및 사용 증가.

1.6 GLA 담당 공무원이 정리한 이제까지 지원사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GLA 팀이 의사 결정 과정에 공동 제작을 통합할 수가 있는 개선된 메커니즘을 마련.
- GLA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지역사회를 적절히 참여시키기 위해 지식, 기술, 동기 부여 및 전문성을 향상시킴.
- 사람들이 도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을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교차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런던 시민의 참여에 더욱 중점을 두는 사업을 실시.
-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견해를 완전히 반영.
- 런던 시민 조직의 필요와 역량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 마련.

1.7 이 MD는 위에 열거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시장결정임.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부문 간 파트너를 포함하여 런던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지원하는 자원 개발을 통한 런던의 참여 관행, 지역사회가 의사 결정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사회의 역량과 자원이 그것이다. 커뮤니티 참여 자원은 제한된 수의 주요 전달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GLA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런던 시민 참여 2023-25 프로그램과 시민 사회 2023-25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MD의 2장에서 자세히 추가로 설명할 것임

1.8 이 작업의 결과와 영향은 시민사회 참여의 팀 평가들을 통해 측정 및 평가.
이 평가 틀은 정책팀, 커뮤니티 조직 및 기타 파트너와 함께 공동 설계, 개발.

이상이 시장 결정 (서울시의 조례에 해당) 3119의 서장에 해당된다. 이를 보면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개정안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하고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2023-25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용되는 예산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2.1 2023-25년 런던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2021-23년에 걸쳐 제공되고 MD2848에 요약된 기존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역사적으로 참여 장벽에 직면한 지역사회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런던의 의사 결정권자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회에 알리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2 이 프로그램은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런던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여를 위한 시스템과 과정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도의 통찰력을 GLA 의사 결정권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GLA의 정책 팀과 부문 간 파트너(자치구, 학술 기관, 지역사회 조직 등 포함)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 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재원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제공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팀과 파트너는 런던의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사업에 참여하여 런던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형성하도록 지원받게 될 것이다.

2.3 런던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목적은 네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 네 가지 목표는

- ① 런던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GLA 임원 및 주요 파트너의 역량, 기술 및 자신감 구축.
- ② 구조적 배제로 인해 기회가 가장 적은 런던 지역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여 이들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런던 지방정부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③ 런던의 다양한 시민사회와 의사 결정자 간의 보다 공평한 관계의 촉진.
- ④ 이러한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작업 흐름을 통해 달성: 참여 관행 개선과 지역

사회를 정책 결정에 연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년간 41만 파운드의 참여 관행 개선 지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함.

- 런던의 참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범런던 실천 지역사회의 설계, 개발 및 제공. 지금까지 런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15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한 런던 참여 협력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여기에는 참가자를 위한 일련의 학습 이벤트, 지식 교환 및 교육 기회 제공, 여러 부문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 협업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등이 포함된다.
- GLA 정책 담당자가 참여 관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구, 지원 및 지침을 제공, 여기에는 GLA 정책팀이 시민 참여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참여 변화 이론 및 평가 틀이 포함됨.
- 런던에서 참여 관행의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및 참여에 초점을 맞춘 학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최대 세 차례 개최 예정.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 협업의 기회를 촉진하며, 여러 부문에서 공유 학습을 활성화할 것.
- 참여 관행에 대한 트렌드, 격차 및 통찰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참여 런던 시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참여 장벽에 직면한 런던 시민에 대한 지원 지속.
- 프로그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및 평가 활동.
- 참여 장벽에 직면한 시민사회 조직을 위한 지급.
-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년 41만 파운드 (년/205,000 파운드)

2.4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에 연결하는 사업에 2년간 최대 40만 2,000파운드를 지원, 기대되는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음.

- GLA 팀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GLA 시민사회 관련정보 허브의 설계, 개발 및 출시. 2021~23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단계를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여기에는 허브에서 기반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 주도 관련정보의 기존 온라인 정보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의뢰, 시민사회 주도 관련 정보의 평가 및 모니터링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이 포함.
- 2022-23년에 GLA와 런던 전역에서 수행된 집단 주도 연구 사용에 대해 수행된 증거 검토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
- 런던 시민을 더 잘 지원하는 방안을 시험하기 위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금 제공을 포함하여 시민 미래 리더십 프로그램(이전에 MD2848에 따

라 승인됨)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차수 선정 위원회를 구성.

- 기존 90명의 펠로우와 향후 4, 5기 펠로우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 미래 동문 네트워크(Civic Futures Alumni Network)를 개발. 이는 참가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여 시민 사회와 지방정부 지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메커니즘, 과정 및 역량을 개선.
- 공정한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및 기타 시장 우선순위의 이행과 관련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개의 참여비에 대해 기부금으로 지원기금 수여 예정.

2.5 위에 언급된 보조금은 의도된 수혜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경로에 따라 런던시의 관련 단체와 GLA의 선정과정을 통해 해당자에 분배된다.

2.6 시민사회 2023-25 프로그램은 모든 런던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를 제공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2.7 시민사회 2023-25 프로그램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① 평등 주도의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및 장소 지원을 개선
- ② 런던의 시민사회 강화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런던 전역에 걸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측정하며, 도시 전체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

2.8 이러한 목표는 시민사회 뿌리 프로그램과 시민의 힘 지수라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될 것.

2.9 시민사회 뿌리 프로그램 2023-25는 자본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인프라 조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 이 프로그램에는 245,000파운드(시티 브릿지 트러스트의 100,000파운드 포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2.10 우리는 시티브릿지 트러스트가 제안한 10만 파운드의 기금 중 2만 파운드를 2024-25년 시민사회 뿌리 담당관의 기존 기간제 직책 연장을 위해 할당하도록 승인 요청중. 현재 기금 중 MD2905에는 2024년 5월까지 인건비로 사용될 120,000파운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추가 20,000파운드를 통해 2025년

9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해지고 이 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GLA 승인을 요청 예정입니다.

2.11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의 분배 및 관리는 GLA를 통해 직접 수행.

2.12 2023-24년에 걸쳐 시민의 힘 지수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지방 당국/기금 제공자)가 이 지수가 제공하는 틀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과 투자의 초점과 필요성을 더 잘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이상에는 데이터의 견고성과 지수의 질적틀을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되며, 지역 실무자들이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85,000파운드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2.13 이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두 지수의 목표가 결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탐색을 포함하여 시민의 힘 지수와 GLA의 새로운 웰빙 지수가 가장 잘 어울리도록 GLA 전반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

〈그림 4-8. 상기 관련 예산 표〉

| Revenue | 2023-24 | 2024-25 |
|---|----------------|----------------|
| Civil Society Roots 3, second-round grants and support programme | £145,000 | £100,000 |
| Civic Strength Index development and operationalising | £85,000 | |
| Income | 2023-24 | |
| Funding contribution for Civil Society Roots 3 from City Bridge Trust | £100,000 | |

출처: MD3119 Community Engagement and Civil Society 2023-25 Programme (<https://www.london.gov.uk/md3119-community-engagement-and-civil-society-2023-25-programme>). 최종검색일: 2023.09.01.

이어지는 예산관련 사항은 이 법령의 5장에도 나온다.

- 2023-24 및 2024-25 회계연도에 걸쳐 런던 시민 참여(Engaging Londoners)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812,000의 지출, GLA의 참여 관행 개선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사회와의 연계 포함.
- 최대 £230,000의 지출로 2023-24년 시민사회 프로그램 제공, 시민사회 뿌리 기금의 2차 제공, 시민의 힘 지수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실행을 지원.

5.2 승인된 2023-24년 예산에는 런던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406,000파운드, 시민사회 프로그램에 230,000파운드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존재.

5.3 향후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연간 예산 설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2024-25 회계연도에 런던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406,000파운드 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예산 설정 및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예산 배정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확정될 것.

5.4 향후 몇 년 동안 GLA가 적용하는 모든 계약에는 적절한 휴지기 조항이 적용될 것임.

5.5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적합한 재무 실사를 거쳐야 함.

위와 같은 결정은 바로 런던 시장을 통해 수립되며 이 법령은 인터넷 PDF로 공개되어 있으며 런던 시장의 서명 또한 같이 공개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 간략히 런던의 시민단체 지원 예산부분에 대해 기금과 최신의 조례까지 포함하여 조사해 보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매우 자세하며 평이하게 설명된 법령이 100%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투명성, 접근의 용이성, 등은 런던의 사례가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나. 도쿄

그럼 이번에는 도쿄의 예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도쿄의 경우도 런던의 경우와 같이 100%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투명성, 접근의 용이성 등은 동일하다. 특히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예산, 보조금 등의 지출 현황, 주요 사업 소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 심의회 결과, 공공문서 공개 상황, 교체비, 해외 출장비 등의 집행 상황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특히 도쿄도의 사업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도 실려 쌍방 소통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포탈에 공개되어 있는 예산은 2022, 2023년 2년 분이다. 2023년 생활문화 스포츠 국 총 예산은 아래 그림처럼 2786억 6700만 엔 규모이다(백만 엔 이하 단위 절삭).

〈그림 4-9 영화5년 (2023년) 도쿄도 생활문화 스포츠국 예산안〉

資料 1

令和5年1月

令和5年度 生活文化スポーツ局 予算案の概要

(単位: 百万円)

| 区 分 | 令和5年度 | 令和4年度 | 増(▲)減 | 増減率 | 主な内容 |
|-------------|---------|---------|--------|--------|-------------------|
| 生活文化スポーツ局 計 | 278,667 | 270,744 | 7,923 | 2.9% | |
| 生活文化スポーツ費 | 59,582 | 57,725 | 1,857 | 3.2% | |
| 管 理 費 | 8,469 | 7,213 | 1,256 | 17.4% | 人件費等 |
| 都 民 生 活 費 | 5,617 | 4,709 | 909 | 19.3% | 共助社会、男女平等参画、多文化共生 |
| 都民安全推進費 | 1,761 | 1,652 | 109 | 6.6% | 治安対策、交通安全対策、若年支援 |
| 消費生活対策費 | 1,819 | 1,479 | 340 | 23.0% | 消費生活相談、公衆浴場対策 |
| 計量検定所費 | 392 | 372 | 19 | 5.2% | 定期検査、検定 |
| 文化振興費 | 17,713 | 19,251 | ▲1,538 | ▲8.0% | 文化振興施策、都立文化施設 |
| スポーツ総合推進費 | 10,579 | 8,207 | 2,372 | 28.9% | スポーツ振興、パラスポーツ振興 |
| スポーツ施設費 | 13,233 | 14,842 | ▲1,609 | ▲10.8% | 都立スポーツ施設 |
| 学 務 費 | 219,085 | 213,019 | 6,066 | 2.8% | |
| 管 理 費 | 1,504 | 1,500 | 4 | 0.3% | 人件費等 |
| 助 成 費 | 217,307 | 211,219 | 6,088 | 2.9% | 経常費補助、保護者負担軽減 |
| 育英資金費 | 274 | 300 | ▲26 | ▲8.6% | 育英資金事業費補助 |

※ 計数については、表示単位未満を四捨五入しているため、合計等と一致しない場合がある。

출처: 도쿄도 생활문화 스포츠국 예산안(<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info/jouhou/0000000895.html>). 최종검색일: 2023.09.05.

이 중에 시민단체 관리에 포함되는 예산은 여러 분야에 분산이 되어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도민생활, 양성평등 촉진 시책 56억 1,725만 엔(2022년 47억 874만 엔)으로 그 중에서 '지역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 13억 6,946만 엔(2022년 10억 3,731만 엔)이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역 저력 발전 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엔(2022년 동일한 2억 5,000만 엔):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인 마을회-자치회의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억 1,948만 엔(2022년 6,204만 엔): 마을의 자랑거리 게시판과 마을회 자치회 응원 캐리밴을 각 구와 시에서 실시. 각 구와 시에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활용 사례를 마을회·자치회, NPO, 대학 등 관계자에게 알리는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예산, 마을회·자치회 디지털 활용 확산 계발 사업 3,064만 엔(2023년 신규사업): 디지털을 활용한 선진적인 시책을 모집하여 우수 시책을 표창하고, 수상 사례를 동영상 등을 통해 널리 확산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로 돕는 사회 만들기 추진(자원봉사 활동 추진) 사업에 3억 6,519만 엔(2022년 3억 7,036만 엔)을 투입하여 그 중에 자원봉사 문화 정착사업에 1억 5,032만 엔(2022년 1억 4,994만 엔)이 배정되어 도쿄 자원봉사 레거시 네트워크 운영 및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및 세미나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다문화 공생 추진 6억544만 엔(2022년 3억7,405만 엔) 안에도 지역단체, 시민단체 관련 예산이 존재하는데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3,138만 엔(2022년 동일한 3,138만 엔)이나 마지막으로 일반재단법인 도쿄도 연결창생재단 보조금 1억 8,352만 엔(2022년 1억 7,648만 엔)도 시민단체 NGO 지원 예산이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인 일반재단 법인 도쿄도 연결창생재단이 다문화 공생사회 만들기, 공생사회 만들기에 관한 사업을 도(都)와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한 운영비 보조에 투입된다.

이를 런던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성이 더욱 드러난다. 런던과는 달리 도쿄는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소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도쿄도 생활문화 스포츠 국의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예산도 런던처럼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강하며 그마저도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런던보다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다는 예산을 찾아보기 쉽고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기도 작년에 비해 어느 부분이 증액되고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도쿄의 경우도 철저한 재무감사, 감리를 통하여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특히 서로 돕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검토회는 총 14번에 걸친 회의를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정책제언으로 도쿄도 정부가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회의의 의사록까지 전부 공개하고 있다. 이런 심의회, 공청회 시스템은 유사한 정치문화를 지닌 한국 지방정부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이어질 이 장의 마지막 절인 서울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단점 분석에 자세히 논의할 부분이지만 요점만 정리하면 두 나라 모두 대표적인 지방정부인 수도의 지방정부가 관련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어렵지 않은 평이한 언어로 설명되어 누가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여러 보고서와 자료들이 있음에도 관련 연구자들도 예산이나 집행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다음 절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4.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과 장단점 파악

이 절에서는 IV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런던과 도쿄의 현황과 III장의 서울시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한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서울시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간략하게 IV장의 앞부분을 정리해가며 서울시의 현황과 비교해 나가도록 하겠다.

가. 런던

먼저 런던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시민단체 지원의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큰 원칙이다. 먼저 투명성을 살펴보면 모든 관련정책, 담당 조직 및 제도, 지원 예산의 규모와 관리 방안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공개되어 있다. 런던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불문법에 기준한 정책들로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각각의 기금이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나 접근성이 어려운 법률적인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중간단체의 역할도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시의 행정 담당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가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구조이다.

두 번째로 연속성은 모든 시민단체 지원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뤄지면서 담보된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이자 기금인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³⁷⁾을 예로 들어보면 3기에 걸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2개월 동안 최대 30,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1라운드(2022년)에서 120개의 단체가 지원하여 31개의 단체가 선정되었고 2라운드(2023년)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전체 지원 서류(Full application)를 제출하는 형식이다. 참여의향서는 단체의 목표와 실현방법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며 참여의향서를 토대로 런던시는 1차 선발을 진행하고 이를 통과한 단체에만 최종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형태이다. 최종 지원인 전체 지원 서류에는 시민단체의 영국 은행계좌 정보, 시민단체 해산 조항을 포함한 정관, 후원단체의 최근 감사 정보와 재무 정보, 지정된 런던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증빙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되게 되어 있다. 또한 250 파운드 이상의 런던시의 관련 지출은

37) Mayor of London. "Civil Society Roots Grant prospectus: Round Two."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civil-society-roots-grant-prospectus-round-two#about-civil-society-roots-funding-173963-title> (최종검색일: 2023. 9. 7.)

모든 예산이 엑셀 파일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 투명성 역시 담보된다.

세 번째로 전문성이라는 측면이다. 런던시의 지원 정책은 어디까지나 지원의 당사자가 선정작업에서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그 좋은 예가 런던 청년시민 기금³⁸⁾이다. 런던 청년시민 기금은 2018년 출범했으며, 런던시의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년을 지원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탈선 위험이 있는 어린이 및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 및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 역량의 개선을 지원하는데 런던시는 프로젝트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또래 집단의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어린이와 청년이 자금 조달, 프로젝트 설계,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청년들은 기금의 우선순위 설정, 지원자 설명회, 지원서 질문지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방문, 프로젝트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즉, 이해 당사자를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직접 선정과정에 참가하게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또한 영국 전국 차원에서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 전문가로 구성돼 단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거버넌스, 모금, 재정관리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 정부기구)가 존재하여 분석과 평가를 위한 역량을 제공하고 그것이 가능한 기구와 시스템을 확보하여 런던시의 시민단체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선단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된 기구로서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이다.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산업은 앞의 시민단체 지원 현황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자선단체, 종교자선단체, 문화유산자선단체, 교육·훈련자선단체, 의료연구자선단체, 노인자선단체, 스포츠·레크리에이션자선단체, 어린이·청소년자선단체, 가족자선단체, 국제자선단체, 환경자선단체가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런던시는 런던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개인, 자선단체에 대해 다음의 분야에서 시상을 진행하여 다양성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그 분야로는 사회 통합 부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분야, 사회적 이동성 부문: 불우한 환경의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 지역사회 참여 부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청년 부문: 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년에게 수상이 있다.

이상으로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또 하나의 해외 사례인 도쿄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38) Mayor of London. "Young Londoners Fund."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education-and-youth/young-londoners/young-londoners-fund> (최종검색일: 2023. 9. 2.)

나. 도쿄

일본의 경우는 영국과 다르게 매우 한국과 유사한 행정적 체제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1998년 NPO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고 도쿄도 내 별도 조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와 유사하다.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은 중간지원조직 격인 TVAC와 협력해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환경 정비에 주력하는데(시민단체의 조직, 운영 능력, 인적 자원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는 장기불황과 고령화 등으로 행정예산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행정 관료조직과 분업화 되어있는 상태여서 시민단체를 유지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네 가지 원칙의 유지도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이뤄진다.

첫 번째 투명성 부분을 보면 대표적인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인 꿈 응원펀드를 예로 들면 선정결과와 함께 배분위원회(우리의 심사위원회에 해당)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몇 팀이 신청해서 몇 팀이 선정되었고 각각의 목적과 선정된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인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위원회는 교수, 시민단체, 전임 도쿄도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꿈 응원 펀드의 조성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발전성 · 효과성」, 「사업의 구체성 · 실현성」,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 지원 활동, 가족 간병인 지원 활동, 소수자의 당사자 활동, 아동과 육아를 하는 부모 지원 활동, 아동식당, 이주민 지원 활동 등 도쿄의 지역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거기에 매년 선정된 역대 사업들을 공개하고 있어 경향성 또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4-10. 2023년 꿈 응원펀드 선정 심사 위원명단>

| 원본 | 번역본 |
|--|---|
| <p>配分委員会委員(順不同・敬称略)</p> <p>加納高仁(東京都共同募金会常務理事) 長沼 豊(日本教育実践研究所) 齊藤ゆか(神奈川大学教授) 渡辺陽子(東京YWCA 財団管理部 企画課 マネージャー) 大島宏之(公益財団法人 キリン福祉財団常務理事・事務局長) 澤 雅弘(公益財団法人 SOMPO福祉財団事務局長) 山崎美貴子(東京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センター所長)</p> | <p>배분위원회위원 (무순, 경칭생략)</p> <p>가노다카히토(도쿄도공동모금회 상임이사) 나가누마 유타카(일본교육실천연구소) 사이토 유카(가나가와 대학 교수) 와타나베 요우코(도쿄 YWCA 기획과 매니저) 오오시마 히로유키(기린복지재단 사무국장) 사와 마사히로(SOMPO복지재단 사무국장) 야마자키 미키코(도쿄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장)</p> |

출처: 도쿄도 2023년 꿈 응원 펀드 결과발표(<https://www.tvac.or.jp/news/50818>)
 . 최종검색일 2023.09.03.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 연속성의 측면이다. 꿈 응원 펀드의 홈페이지에 가면 2012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0년간의 선정 사업 액수가 전부 공개되어 있으며 연도별 선정 경향도 파악이 가능하다. 물론 3년 이상의 사업이 없고 지원액이 소액(50만 엔 제한)이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언제 모집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면 되고 어떤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래의 표는 꿈 응원 펀드 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10년간의 사업 실적 비교이다.

〈표 4-3. 「꿈 응원 펀드」의 조성 사업 실적(2012-2022)〉

| 연도 | 응모 단체 수 | 조성 단체 수 | 조성 금액 |
|------|---------|------------------|-------------|
| 2012 | 170 | 25 | 5,643,000 엔 |
| 2013 | 128 | 21 | 6,831,000 엔 |
| 2014 | 116 | 21 (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18,000 엔 |
| 2015 | 131 | 26 (6개 단체는 계속지원) | 6,420,000 엔 |
| 2016 | 132 | 27 (4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39,000 엔 |
| 2017 | 90 | 22 (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39,000 엔 |
| 2018 | 88 | 20 (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572,000 엔 |
| 2019 | 124 | 21 (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513,000 엔 |
| 2020 | 217 | 75 | 6,043,000 엔 |
| 2021 | 172 | 47 (4개 단체는 계속지원) | 6,170,000 엔 |
| 2022 | 94 | 20 (3개 단체는 계속지원) | 4,896,000 엔 |

출처: TVAC 홈페이지 (<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최종검색일: 2023.08.15. 홈페이지 자료 등의 수집을 통해 재구성.

위 실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응모 시민단체 수에 비해 조성 단체 수와 조성 금액이 많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조성이 이루어졌던 2019년, 2020년, 2021년의 3년 간을 제외하고 응모 단체도 조성 금액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증명하는 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단지 지원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자체의 재정자립도, 자생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야기되어야 하는 측면이 역시 런던과 같은 전문성이다. 일본은 TAVC라는 우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여 전문적으로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TVAC의 운영은 자원봉사 · 시민활동이나 NPO의 대표자,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 · 시민활동 센터 직원, 민간 조성 단체, 행정,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TVAC운영위원회에 의해 시대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부금, 조성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NPO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 활동이 도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TVAC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NPO, 행정, 기업이나 노동조합, 교육 기관, 연구자 등과 제휴하고 있다.³⁹⁾ 이러한 특징에 더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어느 곳에도 전혀 정치성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색깔을 완전히 배제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성이 일본이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모습이다.

39) TVAC 홈페이지 <https://www.tvac.or.jp/tvac/welcome.html> (최종검색일: 2023. 8. 15.)

마지막으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이다. 일본의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지속가능성만 충족되면 다양한 주체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V장의 우수 해외 성공 사례 설명을 할 때 꿈 응원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용을 보충하겠지만 선정된 사업들의 경향이 연도별로 존재는 하지만 도쿄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제라면 모든 주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즉 행정조직의 손이 닿지 않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행정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TVAC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만 740개에 달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신과 관련된 단체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도쿄도의 NPO지원은 다양한 ‘시민펀드’를 중심으로 20년간 추진되어 왔는데, 지역에 밀착된 시민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는 NPO의 혁신성, 주체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다양성과 공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도시의 시민단체 지원, 관리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면 일단 불문법에 기초한 런던시와 도쿄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쿄는 서울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두 도시 모두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가지 요소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단체 관리가 과연 투명하고 언제나 접근 가능하며 시장의 소속정당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전문가들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의 시민단체가 지원에 선정되는지 여러 부분에서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어지는 V장에서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런던과 도쿄의 우수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의 상황에 어떤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의 제언을 시도하며 법률적 지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할 것이다.

〈표 4-4. 런던, 도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 비교〉

| | 런던 | 도쿄 | 서울 |
|-----|--|---|--|
| 투명성 | 관련정책, 담당 조직 및 제도, 지원 예산의 규모, 관리 방안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전면 공개 | 심사위원 명단 공개, 매년 선정 사업 방향성 사전 공개 | 일부 공개이거나 요청 시 공개 |
| 연속성 | 지원 사업 장기적 계획에 의거 실시 (3년 이상), 사업계획 사전 공개 | 10년간의 선정 사업 액수 전부 공개, 연도별 선정 경향 파악 가능 | 개별 년도 공개, 공개 범위 한정 |
| 전문성 | 지원 당사자가 선정작업부터 참여, 전국 차원에서 자선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선정 |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존재 | 중간지원조직의 정치적 성격 분쟁 존재, 당사자 참여 불가능 |
| 다양성 | 사회복지자선단체, 종교자선단체, 문화유산자선단체, 교육·훈련자선단체, 의료연구자선단체, 노인자선단체, 스포츠·레크리에이션자선단체, 어린이·청소년자선단체, 가족자선단체, 국제자선단체, 환경자선단체 등 다양한 주제 선정 | 도쿄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주제라면 모든 주제의 시민단체를 선정, 현재 등록 시민단체 수 740개 | 선정 시민단체 성격의 편향성, 정치성의 분쟁 존재, 다양성에 대한 비판 존재 |

V. 진단과 제언

1. 우수 해외 사례 설명 및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적 제언

그러면 각각의 도시의 우수 사례를 들어보면 런던의 경우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 런던청년시민 기금(Young Londoners Fund), 문화 씨앗 기금(Cultural Seeds)를 들 수 있고 도쿄도의 경우에는 꿈 응원 펀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상 네 가지의 우수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다.

가.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

런던시는 2022년 시점에 시민사회뿌리기금 제3기 사업을 출범했으며, 사회평등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관(equity-led infrastructure organisations)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소수자 공동체가 주도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의 활동으로 사회평등 제고를 위한 단체의 업무와 역량을 개발, 해당 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대변·협업·학습·전략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촉진, 지역단체와 자금 제공자 및 기업 기부금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브롬리, 엔필드, 해로우, 해버링, 힐링턴, 하운슬로, 뉴햄, 레드브리지, 서튼, 완즈워스 등 런던 시내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관련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제3기 사업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30,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첫 번째 라운드(2022년)에서 120개의 단체가 지원하여 31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시민사회뿌리기금의 자금 재원은 시티브릿지트러스트(City Bridge Trust) 및 국가복권공동체펀드(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와 협력하여 런던시가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민사회뿌리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등록 단체, 등록 면제 또는 승인 단체
- 자선 법인 단체(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CIO)
- 지역이익을 위한 보증책임유한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자선 보증책임유한회사(Charitabl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지역사회 이익단체
- 종교 단체(종교를 홍보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지역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 세입자 및 거주자 협회, 세입자 관리 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간 매출액이 50만 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10개 자치구 중 하나에 기반을 두거나, 해당 자치구에서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등록된 단체로부터 추천서 2부를 받아야 하고 영리기관 및 개인, 전국 조직의 지역 사무소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전체 지원 서류(Full application)를 제출하는 형식이다. 참여의향서는 단체의 목표와 실현방법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참여의향서를 토대로 1차 선발을 진행하며 이를 통과한 단체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지원 서류에는 단체의 영국 국내 은행 계좌 정보, 단체 해산 조항을 포함한 정관, 후원단체의 최근 감사 정보와 재무 정보, 지정된 런던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증빙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런던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단체의 활동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며, 활동가의 경비 및 인건비로 사용된다.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문가 활용비, 직원 인건비, 자원봉사자 지원비, 장소 사용료, 교통비, 간접비 등이 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발되기 이전의 활동, 런던 외부에서의 활동, 수익 창출 활동, 해외여행 경비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발 기준으로는 기획의 적합성, 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며 기획의 적합성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기획이 그러한 문제에 명확하게 대응하는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보고 목적 부합성에서는 기획이 기금의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 개발과 전달에 지역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며 실현 가능성에서는 기획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개발 작업을 수행했으며 지원서에서 이를 얼마나 잘 보여주었나? 제안의 실현 단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밝혔나? 예산이 명확하고 기획 실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했나?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더하여 관련 홈페이지에는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소수자 공동체가 주도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기금답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기금 신청을 위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그 설명서의 일부이다.

<그림 5-1. 시민사회뿌리기금 설명서 이미지>

Civil Society Roots Funding Programme

Information about Round 2

Part 1

Civil Society Roots 3 Funding Programme: this is a programme which aims to give funding to organisations in 10 boroughs across London. The funding aims to help organisations give better support to their communities.



This is Part 1 of this document. Here you can read:

1. About Civil Roots Funding
2. What types of projects we support
3. Who can apply
4. Who can't apply
5. What support can you get to apply

Please go to Part 2 when you have finished reading.

2

출처: Civil Society Roots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 최종 검색일: 2023.09.08.

나. 런던청년시민 기금(Young Londoners Fund)

런던청년시민 기금은 2018년 출범했으며, 런던시의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런던청년시민 기금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탈선 위험이 있는 어린이 및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 및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 역량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런던시는 프로젝트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또래 집단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년이 자금 조달, 프로젝트 설계,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청년들은 기금의 우선순위 설정, 지원자 설명회, 지원서 질문지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방문, 프로젝트 평가 등에 모두 참여한다. 기금의 규모는 4,500만 파운드로서 전체 기금 중 3,000만 파운드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되고 나머지 1,500만 파운드는 런던시의 청년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데 투자되고 있다. 또한 우수 사업은 아래의 동영상 링크처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된다.⁴⁰⁾

다. 문화 씨앗 기금(Cultural Seeds)

문화 씨앗 기금은 런던 모든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도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예술, 문화, 문화재 관련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금이다. 지원 분야로는 시각 및 공연 예술(음악, 무용, 연극 등), 영화 제작 및 상영, 문화재 프로젝트, 디지털 아트, 문화 축제, 문학, 독서 그룹, 공예 활동, 합창단 그룹, 창작 글쓰기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자금이 부족한 지역 사회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 이외에도 프로젝트 홍보 및 모니터링, 향후 기금 신청,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문화씨앗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시민 개인, 연간 매출액 5만 파운드 미만의 비영리 단체,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단체(이 경우 서명인 2인이 있는 은행 계좌가 있거나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단체를 지정해야 함) 등 매우 광범위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연간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우 소액이라고 생각 될 수 있으나 전체 지원 총액은 백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액의 지원을 여러 단체에 지급 하는 형태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40) Young Londoners Fund: Football Beyond Borders https://youtu.be/nBjnyry4_vo (최종검
색일: 2023. 9. 4.)

라. 꿈 응원 펀드

이는 앞의 세 사례의 런던시 사례가 아니라 도쿄의 우수 사례이다. 이 펀드는 자원봉사 · 시민 활동 지원 종합 기금으로, 도쿄도내에서 자원봉사 · 시민 활동의 개발 · 발전을 통해서 시민 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NPO와 지역 주민단체의 자원봉사 · 시민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이다. TVAC가 꿈 응원 펀드의 자금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성 내용은, ① 학습회 · 연수회 개최, ② 조사 · 연구 실시, ③ 기구 · 기재의 개발 · 구입, ④ 활동과 관련된 시민에 대한 개발 실시, ⑤ 자원봉사 · 시민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 · 모델적 활동, ⑥ 기타이다. 이 가운데 ⑦ 자원봉사 · 시민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 · 모델적 활동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속 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 금액(지원 금액)은 건당 50만 엔 이내로, 자원봉사 · 시민 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 · 모델적 활동의 계속 조성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 엔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3년의 경우는 150만 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성(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본 기금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이미 종료된 사업이나 구입한 기구 · 기재(재원 부족분 보전), ③ 강사 사례금이나 위원 사례의 단가는 1인당 3만 엔까지를 상한으로 하고, 그것을 넘는 부분, ④ 그룹 · 단체의 관리운영 유지에 상당하는 경비(소모품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홈페이지 유지비, 임대료, 주차장 요금, 전화 · FAX 사용료, 재료비, 인건비, 교통비 등), ⑤ 그룹 · 단체의 정례화된 사업 · 활동(지금까지의 사업 · 활동에 새로운 대응이나 참가 확대 등을 도모한 내용이면 대상이 됨), ⑥ 자구활동으로 판단되는 것(기념 모임이나 기념지 작성, 친목여행 등), ⑦ 고액이 필요한 사업이나 기구 · 기재로 일부 조성해도 실시나 구입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 ⑧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 번 조성해도 그 다음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 ⑨ 그룹 · 단체의 주된 활동 범위가 도쿄도 시외인 것이 그것이다. 이미 IV장에서 최근 10년간 (2012-2022)의 지원 사업 실적표는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성(지원)에 있어서의 각 연도별 특징을 정리하여서 표로 제시하였다.⁴¹⁾

41) TVAC 홈페이지(<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최종검색일: 2023.08.15. 꿈 응원 펀드 페이지의 자료 수집 및 번역.

〈표 5-1. 「꿈 응원 펀드」의 구성에 있어서의 특징(2012-2022)〉

| 연도 | 특징 |
|------|---|
| 2012 | <p>새로운 담당자를 키우는 활동, 보이지 않는 과제에 대해 널리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활동, 시민활동 간 네트워킹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조직의 재정 자립도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었다.</p> |
| 2013 | <p>이미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자원 보전, 운영비 충당, 기재되어 있는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용 견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조성 종료 후의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선정에서 후순위가 되었다.</p> |
| 2014 | <p>새롭게 중점 조성 대상을 마련해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주제는 '가족 간병인 모임의 결성과 실시'였다. 지역에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의 정보 교환과 교류의 장소는 서로의 고립을 막고, 서로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어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에서도 중요시 되었다.</p> |
| 2015 | <p>자연재해의 이재민들을 위한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람들과 분야를 연결하는 안건도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당사자 그룹·자조 그룹 등 같은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활동은 향후 더욱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가 높았다. 한편 신청서의 범위를 대폭 초과한 것, 신청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 등 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p> |
| 2016 | <p>서로의 지역성을 알고 교류를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활동, 자신의 질병이나 의료에 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 장애인 가족 등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다가서는 활동, 학생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어린이 식당 등의 안건이 높이 평가되었다.</p> |
| 2017 | <p>서로의 지역성을 알고 교류를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활동, 장애인 가족 등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다가서는 활동, 「당사자 그룹·자조 그룹 등 같은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p> |
| 2018 | <p>지역의 고령화나 다국적화, 장애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 지원, 육아 중인 부모의 지원 등 현재 지역에서의 절박한 과제가 높이 평가 되었고, 더불어 애초에 제도가 없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활동이 향후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가 높았다.</p> |

| 연도 | 특징 |
|------|--|
| 2019 | 장애자·난치병 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외국인의 상담 지원이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과 육아 중인 부모를 지원하는 활동이 높게 평가되었다. |
| 2020 | 각 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코로나 감염 확대로 사업 및 운영에 지장이 있는 단체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거나 활동 재개를 위해 준비하는 단체를 긴급도와 필요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 2021 | 코로나19 대응에 특화된 특별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발전성·효과성」에 더해 「긴급도」나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했다. |
| 2022 | 코로나 감염 확대로 사회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잠재해 있던 사회 과제가 가시화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 결과, 학습회·연수회나 시민 교육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사업의 발전성·효과성」, 「사업의 구체성·실현성」,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

출처: TVAC 홈페이지 (<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최종검색일: 2023. 08.15. 꿈 응원 펀드 페이지의 자료 수집 및 번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꿈 응원 펀드의 지원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발전성 · 효과성」, 「사업의 구체성 · 실현성」,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자 지원 활동, 가족 간병인 지원 활동, 소수자의 당사자 활동, 아동과 육아를 하는 부모 지원 활동, 아동식당, 이주민 지원 활동 등 도쿄의 지역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이 본 연구팀이 우수 해외 사례로 제시하는 네 가지 사례이다. 네 가지 모두 IV장에서 제시하였던 시민단체 지원의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큰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중간지원조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영국 전국 차원에서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 전문가로 구성돼 단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거버넌스, 모금, 재정관리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된 독립적 정부기구)가 존재하여 분석과 평가를 위한 역량을 제공하고 그것이 가능한 기구와 시스템을 확보하여 지방정부인 런던시의 시민단체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점은 자선단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의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이 크고 일본은 TAVC라는 우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여 전문적으로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TVAC의 운영은 자원봉사 · 시민활동이나 NPO의 대표자,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 · 시민활동 센터 직원, 민간 조성 단체, 행정,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TVAC운영위원회에 의해 시대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에 더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어느 곳에도 전혀 정치성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색깔을 완전히 배제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성이 일본이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모습이다. 이는 현재 시민단체의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V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큰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2. 조례 개정안 도출

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현실화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1항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으로 서울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우선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훈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그 영향으로 전부개정 된 조례의 문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전 조례(제7423호) 제5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조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해당 책무가 시장이 추진해야 할 시책이 우선과제이기보다 주요과제 정도의 무게로 설정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5-2. 시장의 책무 중요도 현실화〉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u>우선과제</u> 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u>주요과제</u> 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지원 대상

또한 제4항은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복적인 표현은 삭제함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

〈표 5-3. 지원 대상 명확화〉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u>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u>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u>시민사회조직</u>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 협치 및 소통·협력 강화

조례의 제2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장은 시의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민관협치 기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동 조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성 측면에서 시의 기본계획에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FGI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인 시와 시민사회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표 5-4. 민관 협치 및 소통·협력 강화〉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u>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u></p> <p>5. <u>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u>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p> | <p>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u>시민사회조직의 운영 지원 방안</u></p> <p>5.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신설) 시와 시민사회조직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p> |

4) 센터 위탁 취소 조항 신설

2022년 하반기, NPO지원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은 동 조례 제22조(센터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음에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센터 위탁 취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표 5-5. 센터 위탁 취소 조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없음 | <p>제22조의 2(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자가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p> |

나.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익사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당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함으로써 셀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선정위원회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런던과 도쿄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공개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표 5-6. 공익사업선정위원 구성 공개 및 셀프 평가 금지〉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p>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 <p>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 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p>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신설) 위원 구성은 사업 선정이 완료된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선정에 참여한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p> |

< 참고 문헌 >

■ 연구논문

- 권구순 · 이재원 · 김성규, 주요 공여국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 양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태구, 제26권 제1호, 2019
- 민경선,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부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2021
- 정상호,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 (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NGO 연구, 제17권 제1호, 2022
- Mary Syng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England and Wales,” Tymen J. van der Ploeg, Wino J.M. van Veen, Cornelia R.M. Versteegh. *Civil Society in Europe: Minimum Norms and Optimum Conditions of its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松井真理子 · 金憲裕, 市民ファンドを通じた市民セクタの再構築とコミュニティエンパワメント, 『四日市大学総合政策学部論集』 第12号, 2013

■ 보고서

- 김건훈 외, 민간 보조 및 위탁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서울시의회, 2022
- 김동춘 외,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 2004
- 김소연 외,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과 쟁점 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2020
- 박영선 · 정병순,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2019-PR-47, 2020
- 이광희,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2-43-01, 2022
- 이영숙 외,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2-53-01, 2022
- 장은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헌정제도 연구 18-20-2, ,2018
- 内閣府, 令和 2 年度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に関する実態調査 報告書, 2021
- 内閣府, 第8回 「新しい公共」 円卓会議資料, p.4-6, 2010
- 内閣府, 平成 24 年度地域における「新しい公共」の担い手による取組事例に関する調査報告書, pp.220-221, 2012
- 東京ボランティア · 市民活動センター, 「2010年度 東京都内 N P O 法人に関する基礎調

査報告書」 p.14, 2011
東京都 社会貢献活動団体との協働マニュアル, P9, 2002
共助社会づくり懇談会, 共助社会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論点の整理と今後の議論の進め
方について, p.1, 2013
資金面の課題に関するWG, 資金面の課題の解決に向けて, 2013

■ 기타 참고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Charity Choice. “The Premier Guide to Charities in the UK” (<https://www.charitychoice.co.uk/charities/london>). (최종검색일: 2023. 9. 3.)
Charity Commission. “Bridge House Estat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charity-search/-/charity-details/1035628>). (최종검색일: 2023. 9. 1.)
Charity Commission. “What makes a cha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makes-a-charity-cc4/what-makes-a-charity-cc4>) (최종검색일: 2023. 8. 29.)
Charity Commission, “Top 10 charities in England and Wal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sector-data/top-10-charities> (최종검색일: 2023. 8. 29.)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 (최종검색일: 2023. 8. 29.)
Civil Society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 (최종검색일: 2023. 8. 16.)
City Bridge Trust. “City Bridge Trust grants reopen.” (<https://www.citybridgetrust.org.uk/news-and-blog/city-bridge-trust-grants-reopen>). (최종검색일: 2023. 9. 1.)
City of London. “City of London funds.”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budgets-spending/city-of-london-funds>). (최종검색일: 2023. 9. 1.)
City of London. “The City Bridge Trust.” (<https://www.cityoflondon.gov.uk/a>

- bout-us/working-with-community/trusts-and-charities). (최종검색일: 2023. 9. 1.)
- Civil Society Roots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 (최종검색일: 2023. 9. 8.)
- London Civic Strength Index <https://www.youngfoundation.org/our-work/publications/london-civic-strength-index/> (최종검색일: 2023. 9. 2.)
- Mayor of London. “Civil Society Roots Grant prospectus: Round Two.”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civil-society-roots-grant-prospectus-round-two#about-civil-society-roots-funding-173963-title>). (최종검색일: 2023. 9. 3.)
- Mayor of London. “Young Londoners Fund.”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education-and-youth/young-londoners/young-londoners-fund>). (최종검색일: 2023. 9. 3.)
- MD3119 Community Engagement and Civil Society 2023-25 Programme <https://www.london.gov.uk/md3119-community-engagement-and-civil-society-2023-25-programme>). (최종검색일: 2023. 9. 3.)
- Young Londoners Fund: Football Beyond Borders https://youtu.be/nBjnyry4_vo (최종검색일: 2023. 9. 4.)
- 도쿄도 생활문화 스포츠국 예산안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info/jouhou/0000000895.html> (최종검색일: 2023. 9. 5.)
- 도쿄도 생활 문화 스포츠국 홈페이지 시민 사회부분 https://www.seikatubunka.metro-o.tokyo.lg.jp/chiiki_tabunka/chiiki_katsudo/shimin/0000000041.html (최종검색일: 2023. 9. 3.)
-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info/jouhou/> (최종검색일: 2023. 8. 20.)
- 도쿄 자원봉사 시민활동 센터 <https://www.tvac.or.jp/tvac/welcome.html> (최종검색일: 2023. 8. 15.)
- 도쿄 자원봉사 시민활동 센터 꿈 응원 펀드 페이지 <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최종검색일: 2023. 8. 15.)
- 도쿄도 2023년 꿈 응원 펀드 결과발표 <https://www.tvac.or.jp/news/50818> (최종검색일: 2023. 9. 3.)
- 도쿄도 그래프로 보는 도쿄도의 NPO법인 인증 수 <https://graphtochart.com/japan/tokyo-non-profit-organization.php#pulationcharttable> (최종검색일: 20

23. 9. 7.)

런던시 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volunteering/search/> (최종검색일: 2023. 9. 1.)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seni> (최종검색일: 2023. 8. 13.)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관리자)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관한 심층인터뷰 질문지

본 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1. 역할 및 업무 | 1-1)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정체성, 비전, 설립목적, 구성원 등) | |
| | 1-2)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
| | 1-3)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1-4)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귀하가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
| 2. 대내외 환경요인 | 2-1) 최근 시민단체 지원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시: 정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주요 관련 조직 관점) | |
| | | 2-2) 시민단체 지원 업무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예산, 인력, 조직, 기술 등) |
| | 강점 | |
| | 약점 | |
|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3-1) 시민단체 지원 업무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지원 정책 미비, 부정적인 여론 등 사회적 관점) | |
| | 문제점 | |

| | | |
|----------------|--|----------------------------------|
| | 개선 방안 | |
| | 3-2)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문제점 | (예시: 지원단체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보조금 부족 등) |
| | 개선 방안 | |
| | 3-3) 시민단체 지원 업무에 대한 정부, 서울시, 유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 관계는 어떠합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문제점 | (예시: 일방적 소통 시스템, 소통 창구의 부재 등) |
| | 개선 방안 | |
| | 3-4) 시민단체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문제점 | (예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성과지표 불명확 등) |
| 4. 기타의견 | 4-1) 전술한 내용 이외에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
| | | |

※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수집된 정보는 이용 후 바로 삭제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례비 지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례 후 즉시 삭제

| | | | |
|-----|--|------|--|
| 성명 | | 소속 | |
| 연락처 | | 주민번호 | |
| 은행 | | 계좌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 () 비동의 ()

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 (활동가)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관한 심층인터뷰 질문지

본 조사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1. 역할 및 업무 | 1-1)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정체성, 비전, 설립목적, 구성원 등) | |
| | 1-2)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귀하가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
| | 1-3)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1-4)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
| 2. 대내외 환경요인 | 2-1) 최근 시민단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부환경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시: 정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주요 관련 조직 관점) | |
| | 2-2) 시민단체 활동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예산, 인력, 조직, 기술 등) | |
| | 강점 | |
| | 약점 | |
|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3-1) 시민단체 활동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지원 정책 미비, 부정적인 여론 등 사회적 관점) | |
| | 문제점 | |

| | | |
|----------------|--|----------------------------------|
| | 개선 방안 | |
| | 3-2)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문제점 | (예시: 지원단체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보조금 부족 등) |
| | 개선 방안 | |
| | 3-3)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협조 관계는 어떠합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문제점 | (예시: 일방적 소통 시스템, 소통 창구의 부재 등) |
| | 개선 방안 | |
| | 3-4) 시민단체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문제점 | (예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성과지표 불명확 등) | |
| 개선 방안 | | |
| 4. 기타의견 | 4-1) 전술한 내용 이외에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
| | | |

※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사례비(5만원)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수집된 정보는 이용 후 바로 삭제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례비 지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례 후 즉시 삭제

| | | | |
|-----|--|------|--|
| 성명 | | 소속 | |
| 연락처 | | 주민번호 | |
| 은행 | | 계좌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 () 비동()

부록 3. 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해외 지방정부의 사례를 통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일시 2023. 8. 28. (월) 16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좌 장 | 김용민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교수)

사 회 | 정성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제 | 이지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 임태훈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최 서울미래정책연구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주관 서울미래정책연구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

도쿄도 시민단체 지원 정책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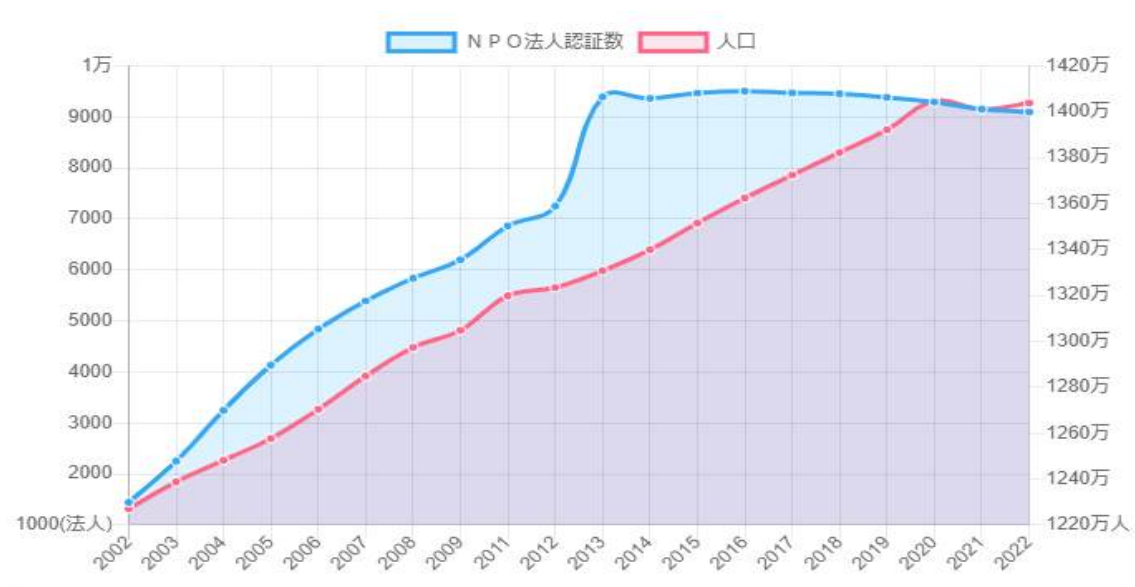
이지영(대전대)

I. 도쿄도의 시민단체 현황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 시행했고, 2011년 4월부터 제7차에 걸쳐 NPO인증제도의 간소화나 인정NPO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조치의 강화 등 NPO법을 개정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NPO는 1999년 1,724개 단체에서 2014년까지 50,086개 단체로 급격히 증가, 2022년 현재는 50,187개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⁴²⁾ NPO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연간 5만 개의 NPO법인에서 약 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전체 NPO법인의 임직원 수도 크게 증가하여 임원들의 수는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급 직원은 약 15만 6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⁴³⁾

도쿄도에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9,157개 NPO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도쿄도 NPO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⁴⁴⁾

<그림1> 도쿄도 NPO 수의 추이(2002-2022)



42) 수치는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https://www.npo-homepage.go.jp/about/toukei-info/ninshou-seni> (검색일: 2023년 8월 13일)

43) 内閣府, 2021, 「令和2年度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に関する実態調査 報告書」, p.30.

44) <https://graphtochart.com/japan/tokyo-non-profit-organization.php#pulationcharttable>

(검색일: 2023년 8월 13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시민활동으로 일컬어지는 NPO의 활동 분야는 NPO법 제2조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규정에 따른다.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20가지로 정의되어있다.

-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 2) 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3)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4)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5)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6)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7)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 8) 재해 구호 활동
- 9) 지역 안전 활동
- 10) 인권 옹호 또는 평화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11) 국제 협력 활동
- 12)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 13)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 14) 정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 15) 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16)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 17) 직업능력 개발 또는 고용기회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18)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 19) 각 호에 열거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 20) 각 호에 열거하는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활동

2010년의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NPO의 주요 활동 분야는 1위가 보건 · 의료 및 사회 복지, 2위 사회 교육, 3위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 4위 아동의 건전 육성, 5위 환경, 6위 국제 협력 분야였다(복수답변).⁴⁵⁾ 2020년 내각부 조사에서 일본 전체 NPO의 주요 활동 분야는 1위 보건 · 의료 및 사회복지, 2위 아동의 건전 육성, 3위 사회 교육, 4위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 5위 학술 · 문화 · 예술 · 스포츠, 6위 환경 분야(복수답변)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10년 간 NPO의 활동에 있어서 변함없이 보건 · 의료 및 사회복지 증진이 가장 주요한 가운데 아동의 건전 육성과 도시 조성 · 마을 만들기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했음을 읽을 수 있다.

45) 東京ボランティア・市民活動センター, 2011, 「2010年度 東京都内NPO法人に関する基礎調査報告書」, p.14.

46) 内閣府, 2021, 「令和2年度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に関する実態調査 報告書」, p.6.

이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의료 및 돌봄 노동력의 부족, 지방의 쇠퇴라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품경기 붕괴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한 재정 상태의 악화로 인해 행정만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제도적,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II. 도쿄도의 시민단체 지원 정책

1. '공조사회의 조성'과 '시민펀드' 구상

일본의 NPO 지원 정책은 2001년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재정 개혁 하에 '행정과의 협동'을 내걸고 위탁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자조와 자립을 원칙으로 NPO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0년 6월에, '새로운 공공'원탁회의가 정리한 '새로운 공공' 선언에서는 '관'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NPO, 기업 등 민간영역이 공적인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관여해 나가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면서 NPO는 이전보다 더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높여온 것이다.⁴⁷⁾

이 '새로운 공공'의 주체가 된 NPO 활동에 있어서의 과제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재정적 자원과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⁴⁸⁾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 2013년 5월 제13차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된 '공조사회 조성 추진을 위하여'(共助社会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공조사회 조성의 중요성을 경제재생·성장전략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일본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조·자립을 제일로 하면서도, 지연조직, NPO, 기업이나 주민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공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지원함으로써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⁹⁾

NPO의 재정적 자원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조사회조성간담회'에 '자금면의 과제에 관한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 워킹그룹은 NPO의 자금 면에서의 지원책으로 '시민펀드'를 중시했다.⁵⁰⁾ 일반적으로 NPO의 수익원은 기부금, 회비, 조성금·보조금, 위탁사업 수입, 사업 수입이다. 이 가운데 조성금은 민간재단에서 NPO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며,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제공되는 자금이다. 이것 들은 건당 금액은 크고 조달하기 쉽지만, 용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유도는 낮다. 위탁사업 수입은 기업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에 의해서 얻을 수

47) 内閣府, 2010, 「第8回「新しい公共」円卓会議資料」, pp.4-6.

48) 内閣府, 2012, 「平成 24 年度地域における「新しい公共」の担い手による取組事例に関する調査報告書」, pp.220-221.

49) 共助社会づくり懇談会, 2013, 「共助社会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論点の整理と今後の議論の進め方について」, p.1.

50) 資金面の課題に関するWG, 2013, 「資金面の課題の解決に向けて」.

있는 수입이다. 조사·연구나 업무위탁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건당 금액은 크지만 사업 관련 경비가 되므로 용도는 제한된다. 사업 수입은 주로 지속적인 사업 전개에 의해 생기는 수입이다. 사업 수입으로 이익이 나오면, 본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가 높은 자금이다. ‘시민펀드’의 구상은 NPO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공조의 주체인 시민 주체들의 재원으로 대체한다는 의도의 명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워킹그룹은 ‘시민펀드’를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한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모아 시민 활동에 조성을 실시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시민들에게 지역의 과제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NPO 등에 시민을 중개하는 ‘시민펀드’는 특히 설립 초기의 NPO나 소규모 NPO에 대한 지원으로서 큰 기대가 모아졌다.⁵¹⁾ ‘시민펀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가능해진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사회에 일기 시작한 기부문화이다. 일본 사회에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은 ‘자원봉사활동 원년’으로 일컬어지듯이 2011년은 ‘기부 원년’으로 불린다.

마쓰이 마리코(松井真理子)등의 학자는 ‘시민펀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시민펀드는 첫째, 기업과 NPO, 또는 NPO와 지연단체 등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조성 과정에서 NPO 간의 상호 평가를 거침으로써 각각의 NPO의 기획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나아가 정보 공개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이며, NPO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의의도 있다. 셋째, 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시민이나 기업이 지역 사회나 주위의 다양한 과제에 당사자성을 양성하는 기회이다. 넷째, 기금에 기부 시 조성 단체나 활동 테마, 활동 영역을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사회 과제의 명확화를 가져온다. 다섯째, 이와 같은 구조는 NPO가 가지는 선진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새로운 선진성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⁵²⁾

2. 도쿄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도쿄도는 이러한 NPO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에서는 도쿄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Tokyo Voluntary Action Center: TVAC)와 협력해, 자원봉사나 NPO등의 시민 활동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NPO 관련 예산은 생활문화스포츠국의 도민생활비 과목의 시민활동 촉진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조사회 조성 추진 사업, 자원봉사 문화의 정착, 운영 보조, 결혼을 위한 기운 조성, 법인 인증 사무, 공익법인 사무, 종교법인 인증 사무, NPO법에 따른 법인 인증 등의 항목에 2022년에는 총 704,874,000엔이, 2023년에는 826,390,000엔이 계상되었다.⁵³⁾

51) 資金面の課題に関するWG(2013), p.7.

52) 松井真理子・金憲裕, 2013, 「市民ファンドを通じた市民セクタの再構築とコミュニティエンパワメント」, 『四日市大学総合政策学部論集』第12号.

53) 生活文化スポーツ局, 2023, 「令和5年度 予算案概要」, p.4.

TVAC는 1981년에 도쿄 자원봉사센터로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시민활동에 관한 상담 사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정보지「네트워크」의 발행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한 정보 사업, 자원봉사·시민활동 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연수 사업, 다양한 과제에 임하는 자원봉사·시민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자원봉사·시민활동의 교류 사업으로서「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에 대해 자금적인 지원을 실시하는「꿈 응원 펀드(ゆめ応援ファンド)」사업이나 민간 조성단체와의 제휴와 연구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종합적인 학습 시간」프로그램 개발이나 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학의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 청년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프로그램, 기업이나 노동조합과의 협동에 의한 기업 자원봉사 활동 추진 프로그램,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봉사 활동의 추진 프로그램, 재해 자원봉사의 추진을 목표로 도쿄 재해 자원봉사 네트워크와의 제휴를 통한 재해 봉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와의 과제별 협동 사업으로서 식사 서비스, 이송 서비스, 노인돌봄 시설·노인돌봄 서비스·그룹 홈에 관한 연구 협의회 등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TVAC의 운영은 자원봉사·시민활동이나 NPO의 대표자,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시민활동 센터 직원, 민간 조성 단체, 행정,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TVAC운영위원회에 의해 시대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부금, 조성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NPO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 활동이 도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TVAC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NPO, 행정, 기업이나 노동조합, 교육 기관, 연구자 등과 제휴하고 있다.⁵⁴⁾

3. 「꿈 응원 펀드」

「꿈 응원 펀드」는 자원봉사·시민 활동 지원 종합 기금으로, 도쿄도내에서 자원봉사·시민 활동의 개발·발전을 통해서 시민 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NPO와 지역 주민단체의 자원봉사·시민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이다. TVAC가 「꿈 응원 펀드」의 자금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성 내용은, 1) 학습회·연수회 개최, 2) 조사·연구 실시, 3) 기구·기재의 개발·구입, 4) 활동과 관련된 시민에 대한 계발 실시, 5) 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모델적 활동, 6) 기타이다. 이 가운데 5) 자원봉사·시민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모델적 활동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속 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 금액은 건당 50만 엔 이내로, 자원봉사·시민 활동 단체에 의한 선구적·모델적 활동의

54) <https://www.tvac.or.jp/tvac/welcome.html> (검색일: 2023년 8월 15일)

계속 조성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 엔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3년의 경우는 150만 엔을 조성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성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본 기금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이미 종료된 사업이나 구입한 기구·기재(재원 부족분 보전), 3) 강사 사례금이나 위원 사례의 단가는 1인당 3만 엔까지를 상한으로 하고, 그것을 넘는 부분, 4) 그룹·단체의 관리운영 유지에 상당하는 경비(소모품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홈페이지 유지비, 임대료, 주차장 요금, 전화·FAX 사용료, 재료비, 인건비, 교통비 등), 5) 그룹·단체의 정례화된 사업·활동(지금까지의 사업·활동에 새로운 대응이나 참가 확대 등을 도모한 내용이면 대상이 됨), 6) 자구활동으로 판단되는 것(기념 모임이나 기념지 작성, 친목여행 등), 7) 고액이 필요한 사업이나 기구·기재로 일부 조성해도 실시나 구입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 8)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 번 조성해도 그 다음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 9) 그룹·단체의 주된 활동 범위가 도쿄도 외인 것. 이와 같은 「꿈 응원 펀드」의 조성 사업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⁵⁵⁾

<표2> 「꿈 응원 펀드」의 조성 사업 실적(2012-2022)

| 연도 | 응모 단체 수 | 조성 단체 수 | 조성 금액 |
|------|---------|-----------------|------------|
| 2012 | 170 | 25 | 5,643,000엔 |
| 2013 | 128 | 21 | 6,831,000엔 |
| 2014 | 116 | 21(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18,000엔 |
| 2015 | 131 | 26(6개 단체는 계속지원) | 6,420,000엔 |
| 2016 | 132 | 27(4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39,000엔 |
| 2017 | 90 | 22(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339,000엔 |
| 2018 | 88 | 20(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572,000엔 |
| 2019 | 124 | 21(3개 단체는 계속지원) | 6,513,000엔 |
| 2020 | 217 | 75 | 6,043,000엔 |
| 2021 | 172 | 47(4개 단체는 계속지원) | 6,170,000엔 |
| 2022 | 94 | 20(3개 단체는 계속지원) | 4,896,000엔 |

상기 실적에서는 응모 단체 수에 비해 조성 단체 수와 조성 금액이 많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조성이 이루어졌던 2019년, 2020년, 2021년의 3년간을 제외하고 응모 단체도 조성 금액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조성에 있어서의 각 연도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⁵⁶⁾

<표3> 「꿈 응원 펀드」의 조성에 있어서의 특징(2012-2022)

| 연도 | 특징 |
|------|--|
| 2012 | 새로운 담당자를 키우는 활동, 보이지 않는 과제에 대해 널리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 사회제도의 변화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에 대한 활동, 시민 활동 간 네트워크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조직의 재정 자립도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었다. |

55) <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에서 필자 작성(검색일: 2023년 8월 15일).

56) <https://www.tvac.or.jp/tvac/programs/> 에서 필자 작성(검색일: 2023년 8월 15일).

| | |
|------|--|
| 2013 | 이미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재원 보전, 운영비 충당, 기재되어 있는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용 견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조성 종료 후의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선정에서 후순위가 되었다. |
| 2014 | 새롭게 중점 조성 대상을 마련해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주제는 '가족 간병인 모임의 결성과 실시'였다. 지역에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의 정보 교환과 교류의 장소는 서로의 고립을 막고, 서로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어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에서도 중요시 되었다. |
| 2015 | 자연재해의 이재민들을 위한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사람들과 분야를 연결하는 안건도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당사자 그룹·자조 그룹 등 같은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활동은 향후 더욱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가 높았다. 한편 신청서의 범위를 대폭 초과한 것, 신청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 등 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 2016 | 서로의 지역성을 알고 교류를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활동, 자신의 질병이나 의료에 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 장애인 가족 등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다가서는 활동, 학생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어린이 식당 등의 안건이 높이 평가되었다. |
| 2017 | 서로의 지역성을 알고 교류를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활동, 장애인 가족 등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다가서는 활동, 「당사자 그룹·자조 그룹 등 같은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 2018 | 지역의 고령화나 다국적화, 장애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 지원, 육아 중인 부모의 지원 등 현재 지역에서의 절박한 과제가 높이 평가 되었고, 더불어 애초에 제도가 없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활동이 향후 중요한 시민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가 높았다. |
| 2019 | 장애자·난치병 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 외국인의 상담 지원이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과 육아 중인 부모를 지원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되었다. |
| 2020 | 각 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코로나 감염 확대로 사업 및 운영에 지장이 있는 단체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거나 활동 재개를 위해 준비하는 단체를 긴급도와 필요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 2021 | 코로나19 대응에 특화된 특별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발전성·효과성」에 더해 「긴급도」나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했다. |
| 2022 | 코로나 감염 확대로 사회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잠재해 있던 사회 과제가 가시화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 결과, 학습회·연수회나 시민 교육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사업의 발전성·효과성」, 「사업의 구체성·실현성」,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꿈 응원 펀드」의 조성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발전성·효과성」, 「사업의 구체성·실현성」, 「보다 사회적 지원이 적은 활동이나 대상자에게」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 지원 활동, 가족 간병인 지원 활동, 소수자의 당사자 활동, 아동과 육아를 하는 부모 지원 활동, 아동 식당, 이주민 지원 활동 등 도쿄의 지역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3. 팔시스템(pal system)도쿄시민활동조성기금

「꿈 응원 펀드」는 NPO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조성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반해 팔시스템도쿄시민활동조성기금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기금은 생활협동조합 팔시스템도쿄의 조합원이 생협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잉여금을 기초로, 도쿄 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를 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구조이다. 연간 총액 500만 엔을 상한으로 지역의 NPO나 자원봉사단체의 조성 신청에 따라 지원해왔다. 행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해, 팔시스템도쿄와 지역의 여러 단체의 네트워크를 넓혀 보다 나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1998년에 창설되어 2022년도까지 총 295개 단체, 총액 약 1억5,920만 엔을 조성했다. 최근의 조성 내역과 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5개 단체에 약 4,704,000엔, 2020년에는 12개 단체에 4,950,198엔, 2021년에는 11개 단체에 4,725,280엔, 2022년에는 12개 단체에 4,919,792엔을 지원했다.

주요 대상은 아동식당, 푸드뱅크, 장애인나 고령자 지원 활동, 성적소수자 지원 활동, 원자력규제 감시 활동, 자사(自死)예방 활동 등이다.⁵⁷⁾

팔시스템도쿄는 1970년에 다마생활협동조합, 다쓰미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직원 수는 1,793명, 조합원 수는 52만6,461명, 총사업액은 864억8,382만 엔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팔시스템도쿄는 ‘먹거리’, ‘지구환경’,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1) 먹거리의 안전성을 증시하고 생활자의 생활과 건강을 지킨다, 2) 일본의 식량 자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함께 산직 운동을 발전시킨다, 3) 안전 · 품질 · 가격 · 산직 · 환경면에서 더욱 뛰어난 상품을 만든다, 4) 여성의 사회참여를 응원한다, 5) 평화, 지구환경, 복지,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⁵⁸⁾

Ⅲ. 평가 및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쿄도의 NPO지원은 다양한 ‘시민펀드’를 중심으로 20년간 추진되어 왔는데, 지역에 밀착된 시민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는 NPO의 혁신성, 주체성을 증대시켜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 역할을 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게 된 기부 문화도 고향납세제도의 확대개편 등의 영향으로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57) <https://www.palsystem-tokyo.coop/report/> (검색일: 2023년 8월 21일)

58) <https://www.palsystem-tokyo.coop/about/vision> (검색일: 2023년 8월 21일)

그러나 공조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펀드의 안정화와 그에 기반한 조성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쿄도의 시민펀드는 주로 인증 초기의 NPO나 소규모의 NPO들의 지원에는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3년 이상의 조성은 없고, 조성 금액도 소액이다. 단기소액의 조성이 많은 것은 시민펀드에 대한 기부의 불안정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한 기부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한편 도쿄도 차원에서 기부 활동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의미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시민펀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펀드 경영지원의 외부기간을 설치하거나 시민펀드의 인증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조사회는 구조적인 과제도 내포하고 있다. 시민 펀드의 육성과 기부 문화의 조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 검토해야 할 보다 중요한 점은 ‘공공’ 그 자체의 디자인의 문제이다. 시민펀드 등에 의해 시민이 그 자금을 선택적으로 ‘공조’에 투입하면 과연 ‘공조’를 담당하는 정부 섹터의 존재 의의의 재정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부 환경의 조성은 세금 우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시민이 정부 섹터를 선택할 것인지(납세), 시민 섹터를 선택할 것인지(기부)의 선택행위이며, ‘공공’의 담당자 그 자체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정부 섹터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 런던 사례

발표: 오창룡(국회입법조사처)

1. 기본 배경

- 영국 시민사회단체(CSO)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보증책임유한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s), 신탁(Trust) 등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함⁵⁹⁾
 - 시민사회단체 중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charitable CSOs)은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관리 감독을 받음
 -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으로 지칭되는 비영리단체는 약 30만 개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⁶⁰⁾
- 모든 자선단체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등록부(Register of Charities)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됨
 - 자선단체의 지위는 활동이 아닌 목적에 따라 결정됨. 활동의 목적이 빈곤 구제, 종교 및 교육 진흥 등과 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자선단체의 자격을 얻음. 자선단체는 오직 자선을 목적으로만 활동해야 하며, 공공정책에 반하거나 회원 또는 설립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음
 - 단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경제활동이 허용되지만, 경제활동은 단체의 목적에 부수적이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단체의 자선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또한 자선단체의 경우 관리자 급여에 관한 법적 제한이 있음
 - 법인격과 관련 없이 자선단체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은 세법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며 각 단체는 이사의 선임·퇴임·해임, 회의 의결 등 내부 거버넌스에 관한 정관을 보유해야 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단체의 등록, 회계 및 보고, 조사 수행, 위법행위 단속, 자산계획 승인 등 자선단체에 관한 규제·감독을 담당함
 - 자선단체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법정 조사를 개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59) Mary Syng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England and Wales," Tymen J. van der Ploeg, Wino J.M. van Veen, Cornelia R.M. Versteegh. *Civil Society in Europe: Minimum Norms and Optimum Conditions of its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60) 김동춘 외.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 2004.

- 일반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자선단체는 자선단체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또는 법정 조사에 대비하여 기부금에 관한 충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 자선단체가 명시적으로 자선 목적을 비자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선위원회는 자선단체 등록부에서 해당 단체를 제외할 수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선단체와 관련하여 모금을 승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자선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지역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은 ‘자선단체’(charity)을 “자선의 목적으로만 설립되고, 고등법원 자선단체법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함⁶¹⁾
- 자선단체법에는 13가지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열함. 자선단체는 아래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구를 기관의 목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① 빈곤예방 또는 구제
 - ② 교육 발전
 - ③ 종교 발전
 - ④ 건강 증진 또는 생명보호
 - ⑤ 시민권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
 - ⑥ 예술, 문화, 유산, 과학의 발전
 - ⑦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
 - ⑧ 인권, 갈등 해결, 화해 증진, 종교적 또는 인종적 조화, 평등과 다양성 증진
 - ⑨ 환경 보호 및 개선
 - ⑩ 연령, 건강, 장애, 재정적 어려움, 기타 불이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호
 - ⑪ 동물 복지의 증진
 - ⑫ 왕실 군대, 경찰, 소방, 구조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⑬ 앞의 목적과 유사하거나 그 정신에 따라 자선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목적
 - 영국의 대학 대부분은 교육·연구의 목적이 공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선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는 다음과 같음

61) Charity Commission. “What makes a cha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makes-a-charity-cc4/what-makes-a-charity-cc4>)

<표 1> 잉글랜드·웨일즈 자선단체 연간수입 상위 10개 기관(2023.1)

| 단체명 | 연간수입 |
|--|--------------------------------|
|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자선단체 지원재단 | £1,044,275,000 (약 1조 8천억 원) |
| LLOYD'S REGISTER FOUNDATION 로이드 레지스터 재단 (공학연구 지원) | £996,514,000 |
| NUFFIELD HEALTH 너필드 헬스(의료 서비스 지원) | £995,600,000 |
|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네셔널 | £988,001,224 |
| THE ARTS COUNCIL OF ENGLAND 영국 예술위원회(예술인 지원) | £941,845,043 |
| THE BRITISH COUNCIL 영국문화원 | £896,655,974 |
| CANCER RESEARCH UK 영국 암연구소 | £668,369,451 |
| THE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OR NATURAL BEAUTY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환경 보전) | £643,329,000 |
| CARDIFF UNIVERSITY 카디프 대학교 | £634,167,000 |
|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COMPANY 국제백신개발지원기금 | £523,659,383 |

출처: Charity Commission, “Top 10 charities in England and Wal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sector-data/top-10-charities>

- 영국 자선단체 위원회는 등록된 자선단체의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
- 영국 정부는 2015년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 검토보고서(CSOs Partnership Review)를 발표하고 전략 목표를 설정함⁶²⁾
 -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함
 - 사회단체 협력프로그램의 적격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62) 권구순·이재원·김성규. “주요 공여국의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 양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태연구』 제26권 제1호, 2019. Gov.UK. “Civil Society Partnership Review”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ociety-partnership-review>).

2. 런던시의 자선단체 지원방식⁶³⁾

- 런던시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자선단체를 지원하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문화 씨앗 기금(Culture Seeds Fund): 런던의 모든 자치구에서 공동체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발을 통해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 사이의 보조금을 지급함
 - 시민사회 뿌리 기금(Civil Society Roots Fund): 흑인 및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 시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고령 인구 지원 단체를 지원함(연간 최대 30,000파운드)
 - 런던 크라우드펀드(Crowdfund London): 런던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후원금을 지급함(연간 최대 50,000 파운드)
 - 청년시민 기금(Young Londoners Fund):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며 4,5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함

- 런던시는 자원봉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역 자선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그림 1> 참고)
 - 자원봉사 희망자는 관심 분야, 동기, 희망 장소 등을 입력하여 자선단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자선활동 경력을 등록할 수 있음
 - 자선단체는 개별 계정을 등록하고 기관 소개, 모집 공고 등을 입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런던의 자선단체는 런던시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런던시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런던시는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선단체가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자선단체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대회(Data Expedition)를 개최함. 자선단체, 정책 입안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유용한 데이터 검색, 데이터 분석과 요약, 현안 적용 등의 협업을 진행함

- 런던시는 런던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개인, 자선단체에 대해 다음의 분야에서 시상을 진행함
 - 사회 통합 부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분야에 수상함

63) Mayor of London. "Five ways City Hall supports local charities."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five-ways-city-hall-supports-local-charities>).

- 사회적 이동성 부문: 불우한 환경의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에 수상함
 - 지역사회 참여 부문: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수상함
 - 청년 부문: 청소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년에게 수상
- 런던시는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조직 운영에 관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자선단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무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지식을 교육함
 -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자선단체 직원과 연결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SNS 캠페인 운영 방법, 맞춤형 의사소통 방법, 성과관리 및 채용절차 등의 교육,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커리큘럼이 개설됨

3.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 사례

1) 시민사회뿌리기금(Civil Society Roots Grant)⁶⁴ (2)

- 런던시는 2022년 시민사회뿌리기금 제3기 사업을 출범했으며, 사회평등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관(equity-led infrastructure organisations)을 지원함
-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소수자 공동체가 주도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의 활동으로 △ 사회평등 제고를 위한 단체의 업무와 역량을 개발, △ 해당 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대변, △ 협업, 학습, 전략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촉진, △ 지역단체와 자금 제공자 및 기업 기부금 연결 등을 제시함
 - 현재 브롬리, 엔필드, 해로우, 해버링, 힐링던, 하운슬로, 뉴햄, 레드브리지, 서튼, 완즈워스 등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함. 해당 대상은 관련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임
 - 제3기 사업은 12개월 동안 최대 30,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함. 1라운드(2022년)에서 120개의 단체가 지원하여 31개의 단체가 선정됨
- 시민사회뿌리기금의 자금은 시티브릿지트러스트(City Bridge Trust) 및 국가복권공동체펀드(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와 협력하여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64) Mayor of London. "Civil Society Roots Grant prospectus: Round Two."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communities-and-social-justice/civil-society/civil-society-roots/civil-society-roots-grant-prospectus-round-two#about-civil-society-roots-funding-173963-title>).

- 시민사회뿌리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은 다음과 같음
 - 등록 단체, 등록 면제 또는 승인 단체
 - 자선 법인 단체(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CIO)
 - 지역이익을 위한 보증책임유한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자선 보증책임유한회사(Charitabl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지역사회 이익단체
 - 종교 단체(종교를 홍보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 지역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 세입자 및 거주자 협회, 세입자 관리 단체

-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간 매출액이 50만 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10개 자치구 중 하나에 기반을 두거나, 해당 자치구에서 활동을 해야 함
 -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등록된 단체로부터 추천서 2부를 받아야 함
 - 영리기관 및 개인, 전국 조직의 지역 사무소는 신청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원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됨.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전체 지원 서류(Full application)를 제출함
 - 참여의향서는 단체의 목표와 실현방법에 관한 정보를 기술함. 참여의향서를 토대로 1차 선발을 진행하며 이를 통과한 단체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짐
 - 전체 지원 서류에는 단체의 영국 은행계좌 정보, 단체 해산 조항을 포함한 정관, 후원단체의 최근 감사 정보와 재무 정보, 지정된 런던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증빙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런던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단체의 활동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며, 활동가의 경비 및 인건비로 사용됨
 -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문가 활용비, △직원 인건비, △자원봉사자 지원비, △장소사용료, △교통비, △간접비 등이 있음
 - 보조금 대상자로 선발되기 이전의 활동, 런던 외부에서의 활동, 수익 창출 활동, 해외여행 경비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선발 기준으로 △기획의 적합성, △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함

- 기획의 적합성: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기획이 그러한 문제에 명확하게 대응하는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가?
- 목적 부합성: 기획이 기금의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 개발과 전달에 지역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 실현 가능성: 기획에 대해 얼마나 많은 개발 작업을 수행했으며 지원서에서 이를 얼마나 잘 보여주었나? 제안의 실현 단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밝혔나? 예산이 명확하고 기획 실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했나?

2) 청년시민 기금⁶⁵⁾

- 청년시민 기금은 2018년 출범했으며, 런던시의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년을 지원함
 - 청년시민 기금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탈선 위험이 있는 어린이 및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폭력 및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함
 -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 역량의 개선을 지원함
- 런던시는 프로젝트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포괄 집단이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함
 - 어린이와 청년이 자금 조달, 프로젝트 설계,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
 - 청년들은 기금의 우선순위 설정, 지원자 설명회, 지원서 질문지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방문, 프로젝트 평가 등에 참여함
- 청년시민 기금 4,5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함
 - 전체 기금 중 3,000만 파운드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됨
 - 나머지 1,500만 파운드는 런던시의 청년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투자됨

3) 문화씨앗 기금

- 문화씨앗 기금은 런던 모든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도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예술, 문화, 문화재 관련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함

65) Mayor of London. "Young Londoners Fund." (<https://www.london.gov.uk/programmes-strategies/education-and-youth/young-londoners/young-londoners-fund>).

- 지원분야로는 △시각 및 공연 예술(음악, 무용, 연극 등), △영화 제작 및 상영, △문화재 프로젝트, △디지털 아트, △문화 축제, △문학, 독서 그룹, △공예 활동, △합창단 그룹, △창작 글 쓰기 등이 있음
 - 저소득층과 자금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보조금 지급 이외에 프로젝트 홍보 및 모니터링, 향후 기금 신청,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 문화씨앗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시민 개인, 연간 매출액 5만 파운드 미만의 비영리 단체,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단체(이 경우 서명인 2인이 있는 은행계좌가 있거나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단체를 지정해야 함) 등 매우 광범위함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연간 1,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런던시의 시민단체 기금 운영

- 런던시 자선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자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 기관을 통해 이뤄지기도 함. 런던시에서 관여하는 기금으로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City Bridge Trust), 씨티 펀드(The City Fund), 씨티 캐쉬(City's Cash) 등이 있음⁶⁶⁾
- 런던시에서 관리하는 씨티 펀드 및 씨티 캐쉬는 자선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선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의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

- 런던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지원 기관인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는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Bridge House Estates)에서 설립한 자선 목적의 신탁기관임
-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는 1097년 윌리엄 2세가 런던의 교량을 수리하기 위해 특별세를 모금하여 기금을 관리한 데에서 유래함. 1282년 왕실 헌장을 통해 법적인 지위와 관리 기구를 확보함
 - 런던시 지역공사(City of London Corporation)는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의 유일한 수탁기관임⁶⁷⁾

66) City of London. "City of London funds."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budgets-spending/city-of-london-funds>).

-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는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지출해 왔으나 1995년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런던 시민의 공공 이익을 위한 자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현재 씨티 브리지 트러스트는 런던시 최대의 보조금 공여 단체이며 연간 약 3,0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⁶⁸⁾
- 브리지 하우스 에스테이트의 연간 수입은 2022년 기준 3,410만 파운드(약 580억 원)이며, 지출은 6,660만 파운드(약 1,140억 원)로 집계됨⁶⁹⁾
 - 수입은 투자수익 3,040만 파운드, 자선활동 수익 310만 파운드, 정부보조금 20만 파운드, 기타 소득 40만 파운드 등으로 이뤄짐
 - 지출은 자선활동 4,900만 파운드, 기금조성비(raising fund) 1,530만 파운드, 기타 지출 200만 파운드 등으로 이뤄짐

2) 씨티 펀드 및 시티 캐쉬

- 씨티 펀드는 런던시 지역 공사, 경찰청 및 보건청의 활동 비용으로 활용되며, 임대료 및 이자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함
 -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 요금 수입의 일부, 지방 의회 세금 등을 수익금으로 함
 - 지역 공사는 규정에 따라 런던시에서 징수한 사업 요금의 일부만 보유하며, 나머지는 중앙 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로 재분배됨
- 씨티 캐쉬는 런던시 지역공사가 관리하는 자선 기금으로 주로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조성됨
 - 공간 관리 및 보전, 런던시장 활동 지원, 런던 도매시장(Smithfield와 Billingsgate) 운영, 길드 홀음악연극학교(Guildhall School of Music & Drama) 운영 등을 위해 지출됨

67) City of London. "The City Bridge Trust."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working-with-community/trusts-and-charities>).

68) City Bridge Trust. "City Bridge Trust grants reopen." (<https://www.citybridgetrust.org.uk/news-and-blog/city-bridge-trust-grants-reopen>).

69) Charity Commission. "Bridge House Estates." (<https://register-of-charities.charitycommission.gov.uk/charity-search/-/charity-details/1035628>).

토론문

고려대학교 노르딕-베네룩스 센터
임태훈 연구교수

갈수록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사회도 이에 발맞추어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의 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역사와 성숙도가 깊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시민단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일부 주요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과도한수도권 집중화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시대적 흐름으로 귀결되는 지방분권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비(非) 수도권 지역도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만큼, 지방에 근간을 두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등장과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방에 소재한 시민단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며, 그 대신에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해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시민단체지원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시민단체지원의 모범적 사례로 영국 런던시의 사례를 참조점으로 삼는 것이 유용하게 보인다. 물론 한국과 영국 간 정치경제적 여건 및 민주주의 성숙도 차이로 인해, 런던시의 예산지원 규모와 정책적 범위로 절대적인 척도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런던시가 시행하는 시민단체 지원의 원칙과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총 2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런던시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런던시는 문화씨앗기금, 시민사회뿌리기금, 런던크라우드펀드, 청년시민기금의 총 4가지 형태로 시민단체의 양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원기준이 상당히 개방적임과 동시에 독창적인 복안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화씨앗기금은 시민단체의 육성이 정치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목표를 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치 및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과 반감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청년시민 기금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생활 촉진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향후 참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런던시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정치적 논란과 편향성을 일소하고 원론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단체문화의 발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런던시의 기금운영 방식이다. 런던시는 신탁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이는 자금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자선단체 지원을 목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신탁기관에 의한 보조금의 전용을 예방하고 런던시의 관여는

신탁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창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 정책과 방향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가 비정치경제적 분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면,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혹은 권력지향성 확대를 감소시키고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활동이 유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의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예비 시민단체 활동가의 양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문 신탁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은 지방 시민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시민단체의 부패와 관료화를 저지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

은 정책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전술한 시민단체의 수도권 집중성 내지는 독점성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정치적 소통 및 문제해결 체계가 발전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문제인 재정적 독립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런던시의 시민단체들도 완전한 재정적 자립 내지는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한국의 시민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런던시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여 미래시민단체 활동가의 양성과 시민단체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강화시킨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향후 기부 및 자발적 재정적 지원이 촉진되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립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도 일정수준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토론자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원확대와 보조를 같이하여, 시민단체의 자체적 투명성 확보 및 활동분야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런던시의 사례가 성공적이었던 요인 중 하나는 단순히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현지 시민단체의 노력이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시민단체와 시민 간 신뢰관계의 건설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토론문

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본 토론문은 “도쿄도 시민단체 지원 정책 및 현황”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에서 사례로 제시한 도쿄도 시민단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 비영리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시민사회가 발전했다는 시각이 있다. NPO를 비롯한 시민단체 혹은 볼란티어 그룹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협회나 단체가 성숙한 시민사회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Tsujinaka and Pekkanen, 2007). 이들은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방단체와 중소기업의 전문화된 단체를 중심으로 관료의 권위에 도전하며 새로운 정치적 기회의 장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사례로 제시한 시민단체는 소위 ‘생활형’으로 복지, 간호, 교육, 도시 조성, 마을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도쿄도 시민단체 역시 “일본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결과”로서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발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 재정적 자립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불황으로 점차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일본에서 시민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발표문에서 밝히듯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NPO의 자조와 자립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NPO의 조직과 운영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충분한 인력 공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일본에서 세수 부족과 정부 예산 축소, 복지 혜택 감소의 악순환은 예견된 상황이다. NPO 유지를 위해 대안으로 구상된 것이 발표문에서 제시한 ‘시민펀드’와 같은 사업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기부를 통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나 매우 이상적이며 현실은 쉽지 않다. 시민단체를 자립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본문에서도 밝히듯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나 3.11. 대지진의 경우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기부가 대규모로 확산 혹은 확대되기 쉽지 않다.

셋째, 경제적 위기는 NPO에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한다는 점이다. 발표문에서 제시하듯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NPO 지원 정책도 변화했다. 사례로 제시한 도쿄도 생활문화스포츠국은 시민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다만 적은 자금으로 엄격한 관리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NPO의 자립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조성 금액이 많지 않다면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활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지원은 보조수단에 불과하

며 NPO는 스스로 자립 존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발표문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며 공적이든 사적이든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도쿄도 시민단체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시민단체는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구조에 놓여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시민단체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권지)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 (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제 안 : 서울특별시의회 미래정책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법제담당관)

담 당 자 : 정책지원관 양성욱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 용 민

연 락 처 : 02-6920-0348

발간등록번호: 51-6110100-000315-01

※ 본 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연구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수행자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최종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